

第284回國會  
(定期會)

知識經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查小委員會)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11月26日(木)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계속)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제품안전기본법안
6.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7.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8.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 54.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 5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 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 4

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	4
7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	4
7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	14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	14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	14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	15
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	22
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	22
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	22
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	22
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	22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	22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	22
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4
2.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	47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	48
6.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7.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	49
8.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9
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50
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	53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	54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	54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	54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	54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54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	54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18. 전기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	59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	61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범도 의원 대표발의) .....	61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	61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	61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	61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	61
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	67
3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	67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 .....	67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7

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3) .....	69
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19) .....	69
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69
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	69
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3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	71
3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1
5. 제품안전기본법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	73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 .....	76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	76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	76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	76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	76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	76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 .....	76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 .....	76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	76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76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	76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76
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	76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	76
5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	76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6
53.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76
54.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76
5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	76
5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76
5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	76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노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지경부 소관부터 심사해 왔습니다마는 지경부차관의 부득이한 행사 관계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특허청·중기청·지경부 순서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7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내지 제73항 노영민 의원, 조승수 의원, 곽정숙 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특허청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특허출원 시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정보를 기재토록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는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곤란하고, 선행기술조사 내용에 불필요한 정보가 다수 포함될 경우 오히려 특허심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행 선행기술 대신에 배

경기술 기재의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한 체계와 자구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에서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형태의 기재를 의무화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최선의 실시형태가 객관적으로 입증에 곤란하고 심사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확대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먼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연구시험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특허의약품의 경우 신속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각각 분리 규정하고,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요건과 절차를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허발명의 정부 실시와 관련해서 WTO TRIPS 협정 및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개정안과 같이 완화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국방이나 공중보건, 환경보호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와 특허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음으로써 개정안의 자구를 WTO TRIPS 협정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의 분리에 따른 일부 체계와 자구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승수 의원님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심사자료 7페이지, 8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곽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이 내용도 특허권의 수용 또는 정부실시의 요건에 '재난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조승수 의원님 안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 고정식 특허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선행기술정보의 기재 의무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를 한 그런 사안으로서 도움이 되는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저희 중소기업에서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제재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출원인이 알고 있는 최선의 기술인지, 알고 있는 것의 전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 내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를 살려서 현재도 본인의 발명에 연관이 되고 기저가 되는 배경기술을 분명히 제시하게 함으로써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과 관계 업계의 의견을 전문위원실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이 현실적으로 의원님의 입법취지도 살리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는 진일보한 안이라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수 의원님과 곽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부분, 또 수용과 정부의 강제 실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의약품의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왕 하는 김에 농약관리법도 똑같은 체계니까 그것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전문위원실이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또 종전에는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가 같이 규정이 돼 있었는데 특허권의 권리자체를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용 부분과 강제실시를 분리하자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강제실시의 경우를 WTO TRIPS 협

정에 따라 정리하자면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실의 판단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잘 조화시킨 그런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저희는 상당히 당초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입법취지도 살리면서 또 업계의 지나친 부담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IT5 국가로서의 위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낸 것이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출원인이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특허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현행 특허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이 선행기술의 문헌을 알고 있을 때는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선행기술이 기재된 그 페이지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따라서 노영민 의원안이 시행규칙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상 의무로 승격시키는 수준이거든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문제점대로라면 현행 시행규칙은 아무도 준수하지 않는 내용을 권장하고 있다, 스스로 그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모순에 빠진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심사관이 알기 어렵다는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도 역시 외국에서 공저·공용된 기술인지를 심사관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제안이유 자체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최선의 실시형태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심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제안이유 역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오늘 아침에 다시 문서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검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허청장 고정식** 위원님, 지금 아마 선행기술

하고 배경기술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행규칙에 돼 있는 것은 배경기술을 기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배경기술하고 선행기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이라고 하면 우리 심사관들이 그 기술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정 또는 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기술을……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네요.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허출원인이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어요?

**○특허청장 고정식** 그것은 심사 자체는 저희 심사관들이 선행기술을 책임을 지고 다 조사를 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만 신규성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신규성·진보성이 있는가를 저희 책임하에 판단하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빠져나가잖아요.

**○특허청장 고정식** 물론 빠져나가면 특허법원에서 또 무효화를……

**○소위원장 노영민** 그거 가지고 선행기술 조사하고 다 하지요. 그것을 모르나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기술을 대부분 특허출원한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요? 특허출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특허출원한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외국에 특허출원된 선행기술에 대한 이런 것을 숨기고 제출한단 말이에요. 통과되거든, 현실적으로. 이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 기재 의무화는 ‘비용이 부담된다’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특허청장 고정식** 이렇습니다. 물론 심사관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원의 소위 무효나 등록거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투는 절차가 있고요. 또 특허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줄 것을 안 줬다든가 안 줄 것을 줬다든가 하는 것은 다투는 사법적 구제절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100% 늘 한다고는……

○소위원장 노영민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출원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르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기재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돈 1원도 안 들지요. 경제에 부담이 있습니까? 자기가 선행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자기가 특허를 제출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출한 특허기술의 선행기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모른다, 돈 듭니까? 돈 안 들지요? 경제적 부담이 있어요? 경제적 부담 없지요? 답변해 보세요.

내가 이 특허를 제출하는데 이 특허기술의 선행기술이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없어. 없다, 모른다, 돈 듭니까? 경제에 부담이 됩니까? 안 되지요?

○특허청장 고정식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소위원장 노영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본인이 알지요, 속일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속일 생각이 없다면,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속일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장 고정식 아니, 그런데 위원님 여기……

○이종혁 위원 청장님, 노영민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기관에서의 답변, 그걸 간략하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또 논쟁 식으로 이게 되면 안 되니까요.

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배은희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은데……

○특허청장 고정식 예.

○배은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선행기술과 배경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이점을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배경기술은 다 쓰게 되어 있는 거죠?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습니다.

배경기술은요, 지금도 우리 국제특허협력조약이라든가 여기에서 공통적인 의미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기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그 공지 시점 같은 게 특정되어 있어 가지고 발명의 특허요건 판

단하고 관련이 되는 기술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면 배경기술을 할 때, 그러면 선행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면 쓰게 되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위 많은 부분의 배경기술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선행기술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예.

○특허청장 고정식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소위 특허성 판단과 연결된 선행기술이라고 그렇게 지칭할 적에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특허획득이 목적인 출원인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자기 특허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그걸 찾아 가지고 내겠느냐, 이런 건 처음부터 출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배은희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선행기술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출원자가 쓰지 않고 또 심사관이 이걸 발견을 못해서 특허등록이 됐다, 그럴 경우에 그 후에 특허가 권리를 계속 인정해서 갈 수는 없죠?

○특허청장 고정식 갈 수는 없죠. 적발이 되는 것이죠.

○배은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출의 90%를 의존해서 가는 나라기 때문에 국내특허만으로는 사실 특허거래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해외특허로 다 가게 되는데 그때도 숨기고 갈 수는 없죠, 현재 상황에서.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죠, 다 그건 드러나죠.

○배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소위원장 노영민 드러나기 전까지는 특허죠, 국내에서.

○배은희 위원 예, 동의는 하지만 이걸 법에다 까지 넣어서……

○소위원장 노영민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데도 안 썼는지를 우리가 밝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결국은 드러났을 때 사후적……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때 몰랐다고 그러면 되

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허청예산도 보다 보면 선행 기술조사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데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이 특허가 특허출원 당시에 몰라서 못 쓴 선행기술이 사실은 특허가 진행되면서 18개월 이내에 공개가 돼서 그때 또 선행기술이 새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허등록 심사를 할 때 선행기술에 대한 아주 철저한 조사는 심사관들의...

○**특허청장 고정식** 잡(job)이죠, 기본적 의무.....

○**배은희 위원** 의무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행기술을 놓쳐서 특허등록이 됐다, 이 부분은 심사관들 책임이죠.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고 그게.....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부담이 증가됩니까? 부담 증가가 이것의 문제점, 그걸 하나 지적한 거예요. 부담 증가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부담이 증가돼요?

○**특허청장 고정식** 예,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부담이 증가가 되죠.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부담이 됩니까?

본인이 모르고 안 써.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쓰라는 거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게 부담이 됩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그건 안 되죠, 본인이 아는 걸 쓰면.....

○**이종혁 위원**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쓰는 건 부담이 안 되겠지만.....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지. 그걸 쓰라는 건데 왜 부담이 된다 그러죠?

○**이종혁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쭙 볼게요.

우리 노영민 위원장님께서 이런 법을,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반드시 일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신규 조항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득과 실을 우리가 일부.....

이건 예를 들자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해야 할 어떤 그런 이익이 있다,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기대이익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익침해라든지 혹은 아니면 경제력 상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비교적 합목적적 방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우선 여쭙 보면요.

우선 저는 위원장님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성, 선행기술의 존재를 알고 자기의 특허취득을 위해서 이런 선행기술의 존재에 대한 사실적 관계를 빠뜨리고 한다, 나는 이런 게 과연 요즘에 이게 소위 말하는 지적재산의 중요성 그리고 또 정보화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또 특허기술에 대한 신규성 부분은 어느 한 기술이 유의미하면 유의미할수록 전 세계가 내 특허 침해하는 게 없는가라고 침해하게 다 이것 서치가 다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의 현실적 사실이 무모하게 이렇게 선행기술의 존재를 알고 내가 우선 특허를 취득해 놓고 보자라는 식의, 나는 이런 유의 사실관계는 잘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예, 뭐.....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선행기술 조사하는 예산 다 깎아야 돼요.

○**이종혁 위원** 아니, 그다음에요.

아니, 그건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소위원장 노영민** 특허청이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데.....

○**이종혁 위원** 특허청은 심사관으로서 예를 들자면 어느 누가 그런 유의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신규성이 있는가, 선행기술 있는가,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또 질문이 그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 등등 해서 소위 지식재산시대에 있어 가지고 특허권이 재산이고 경쟁력이고 하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런 유의 R&D 투자, 발명,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대개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선행기술을 조사를 하게 되려면 이 서치비용이나 조사분석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조그마한 벤처기업을 운영해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을 제가 현실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거든요. 선행기술을 알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개의 중소기업이 자기가 연구개발에 포커스

를 맞추어 가지고 거기다 R&D 투자하고 쭉 시간 보내고 쭉 이렇게 해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 낸 다음에 이제 특허를 출원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것이 과연 다른 기준에 존재하는 선행기술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것 참 조사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을 할 때 먼저 변리사한테 그 얘기는 하죠.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러면 변리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등등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사회적 약자의, 굳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것 없이 결국 뭐냐면 다양한 앞으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법에 명문규정으로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위반 시 특허 거절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하는 그런 득실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차원으로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걸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과하고 좀 뭐한 그런 게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예,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제가 노영민 위원장님의 포인트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아마 배경기술을 총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되는 기술이 다……

○**소위원장 노영민** 배경기술 속에 선행기술도 들어가죠, 대개. 중복이 많이 되죠.

○**특허청장 고정식**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러면 중소기업자가 실제로 내가 아는 기술 중에 어떤 게 특허요건 판단에 중요한 정보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 배경기술이 기재된 문헌정보의 공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 보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변리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아는 것 그냥 다 쓰면 되지 않느냐, 아는 것 쓰는 건 이제 관련된 기술입니다. 자기가 발명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선행기술을

다 적으라 그러면 특허요건 판단에 관계되는 것들을 골라내 가지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대했구요. 미국은 이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사실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똑같은 것이 과거에도 논의가 좀 됐습니다만……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을 숨기고 특허출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선의의 기대인데 그렇지 않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제도적인 것이 열려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법이라는 것이 거의 90% 이상은 대 선언적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건에서 1건이 나올지 1만 건에서 1건이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법이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길을 열어 놔느냐, 열어놓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선언적 의미로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것 해 주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고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선언적 의미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비용이 추가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게 추가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종혁 위원** 선행기술을 정보를 기재토록, 이렇게 조항을 넣으면……

○**소위원장 노영민** 그게 현재 이미 이게 배경기술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되어 있잖아요. 선행기술과 배경기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할 때 비용부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이명규 위원**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소위원장 노영민** 말씀하세요.

○**이명규 위원**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못 내 줍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측면을 달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한 것 좀 문제다, 왜 문제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감추고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수정안 자체도 알고 있는 범위에서 배경기술을 기재한다,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는 이게 우리 형법 지금 다루는 것도 아니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인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특허와 같은 이런 경우는 본인의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아는 것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그게 특허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본인이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몰랐다, 그게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선행기술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감추고 특허를 받으면 특허 취소하고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면 그러면 특허 인정해 줄 거냐 이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행기술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맞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주관적인 사항을 법률에 넣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안 자체도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또 자기가 아는 최선의 실시 형태,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인 면을 특허에 해서 되겠는가,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허청장 고정식** 그래서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올리면요.

그래서 국제특허조약 PCT에서도 알고 있는 범위로 그렇게 국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경기술 제출을 의무화하자, 하는 건 좋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런데 배경기술하고 선행기술하고, 아니 글썄 배경기술은 그야말로 아까 청장이 설명한 것처럼 특허의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그건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아니고요.

○**이명규 위원** 그런데 이 선행기술은 특허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무에.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배경기술에 대해서 어느 걸 몰랐다고 해 가지고……

○**소위원장 노영민** 특허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이명규 위원** 아니, 이야기 좀 끝내고 하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오해가 돼요, 오해가.

○**이명규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 이야기 좀 끝내고 하십시오.

배경기술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특허에 배경기술이 어느 것 하나 더 빠졌다 해 가지고 그건 특허의 효과가,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선행사실이 있다, 없다, 이걸 특허효력의 유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예.

○**이명규 위원** 그게 성격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사항에 관련된 안다 모른다, 이걸 가지고 법문에 기재한다는 건 좀 어렵다, 저는 끝내겠습니다.

○**李玲愛 委員** 저도 이것 다른 것 뭐 선행기술, 배경기술 다 말씀하셨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요. 법기술상으로 봐서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기재를 안 했다, 그러면 특허거절결정사유에 해당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불확정한 개념을 법률에 넣어 놓는 것은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행 특허법에도 심사관의 사실 여부를 알기 힘든 사항은 거절 이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관적으로 사유 없이 거절 이유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경기술과 선행기술을 자꾸 잘못 말씀하셔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배경기술 때문에 특허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행기술이라고 해서 다 특허취소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기술이면 다 특허취소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배경기술은 다 특허취소에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경기술 내에도 선행기술이 들어가

요. 그건 아시잖아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배경기술에서는 특허취소와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선행기술에 저촉이 되면 다 특허취소가 부인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지금 오해를 하시잖아요.

○**특허청장 고정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배경기술이라 함은요, 발명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여간 참고했거나 또 아니면 그걸 피했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 배경기술이 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그렇죠.

○**특허청장 고정식** 그걸 아는 범위 내에서 적으라 하는 건 국제특허조약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관들이 서치라고 할 적에 좀 더 범위를 쉽게 줄여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선행기술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완전히 똑같아 가지고 그걸로 신규성 자체가 부인되는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 이제 그거의 이용발명……

○**소위원장 노영민** 그걸 모르지 않아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지금까지.

○**특허청장 고정식** 그러기 때문에……

○**소위원장 노영민** 그건 다 아는데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경기술과 선행기술을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되죠?

○**특허청장 고정식** 예, 일부 중복이 되죠.

○**소위원장 노영민** 일부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복이 됩니다.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죠. 그러나……

○**소위원장 노영민** 중복이 된다는 뜻은 뭐니까?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배경기술에 저촉된다 그래서 다 이걸 특허기술 취득과 문제없는 게 아니고 선행기술에 저촉된다 그래 가지고 다 이게 특허 취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말씀을 잘못 하시니까 지금 혼란이 생긴 겁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특허청장 고정식**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 부분에 관한 답변.

○**특허청장 고정식** 그 이용발명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행기술조사 하다 보면 말입니다. 종전에 있던 기술을 꼭 써 가지고 좀 더 플러스해서 좋은 게 만들어지면 그건 특허를 또 줍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죠.

○**특허청장 고정식** 그 관계는요, 그런데 이 출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자기의 기술의 모태가 되는 이런 게 또 뭐가 있었는지를 또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의 실체는 그걸 선행기술이라고 이름 짓게 되면 특허성 판단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변리사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계에서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이학재 위원**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행기술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면 예를 들어서 선행기술 때문에 특허출원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렇다고 했을 때에 특허출원자가 안 쓸 수도 있지만 또 선행기술에 대한 어떤 검토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스스로 걸러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특허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술들을 쭉 이렇게 써 놓으면 심사에 오히려 좀 간소화되지 않나요? 이게 왜 심사를 불필요한, 심사에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허청장 고정식** 그건 이렇습니다.

제대로 잘 서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면요, 주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학재 위원** 예, 그렇죠.

○**특허청장 고정식**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특허발명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그런 걸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서 이렇게 주기도 어렵고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하고 정부 안에서의……

○**배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은 특허 등록이 거절될 선행기술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감추고 특허 등록을 결정 받는다, 그것을 막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특허가 등록 거절될 것을 아는 선행기술을 쓰고 특허 등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특허출원을 아예 안 하고……

○**이종혁 위원** 악의일 경우에는 기재 의무 부여 해 봐도 누락시키니까 이 법은 실익이 없다가야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그것을 쓰면서 특허출원하는 바보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법에 명시가 되면……

○**소위원장 노영민** 전문위원님, 한미 FTA에 이 특허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법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에서는 특허출원할 때 반드시 변리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에 들어가 있으면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행기술조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출원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게 법에 있는데 어떤 변리사가 선행기술조사를 안 하고 내서 특허등록 거절됐다 그럴 때 출원인한테 책임을……

○**소위원장 노영민** 한미 FTA 특허조항에서 이것 어떻게 됩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확실해요?

○**특허청장 고정식** 예.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보고받은 것은 좀 달라요. 미국에서 거론했고……

○**이종혁 위원** 관계없음을 따로 설명을 드리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이 조항이 한미 FTA에서 거론된 조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지요.

○**이명규 위원** 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지요.

다음에 하지요.

○**배은희 위원** 다음에 하지지요.

○**이종혁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되는 데 별로 실효성 없고 하나의 허들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허청장 고정식** 한미 FTA에는 4개 조항만 들어가 있는데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라, 그다음에 등록이 지연됨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다음에 공지의 예외기간이 저희는 6개월로 돼 있는데 12개월로 해 달라, 그리고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하는 것, 그 네 가지가 한미 FTA와 관련해서 특허 쪽에 관

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식의 IDS는 우리나라 제도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것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내지 73항은 좀 더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심사를……

○**이명규 위원** 71항만 하지지요.

○**배은희 위원** 71항만 하지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같은 법이기 때문에 심사는 같이해야 되요.

○**전문위원 문병철** 그런데 위원장님, 조승수 의원님 안은 사실 급한 안입니다. 정부의 강제 실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이것은 하시고 가지지요. 지금 타미플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명규 위원** 그래요. 71항만 미국 사례 한번 연구해 보시고 FTA 얘기하시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72항하고 73항은 하지요. 72항 73항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타미플루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빨리 해 주는 게 논란을 종식시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72항하고 73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직 안 하셨는데……

○**이명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도 이의 없습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과 제73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7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50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니다.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발명 및 산업재산권 용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발명에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산권의 정의에 반도체 배치설계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관련 정보제공 및 정보산업 육성, 권리화·사업화 지원 및 분쟁조정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이런 목적을 가진 반도체 배치설계법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봐서 삭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정보 수요자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현재보다 손쉽게 획득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산업재산권 정보'의 용어 정의를 수정함에 따라서 일부 체계자구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대상에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계획,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사업의 추진계획 등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계획은 대부분 내용이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평가 등 단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현행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연간 단위의 계획에 중장기적 계획에 관한 사항을 부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 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해당 산업재산권 정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경쟁력 제고를 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20조의6과 제20조의8이 동일·유사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체계자구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위원의 확보 및 조정 품질 향상을 기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 대체토론시에 조정위원 수의 상한선 40인을 폐지하여 신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보호사업 및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사업 및 해외산업재산권센터 설치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활용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및 장기 미활용 해외 국유특허권 포기를 허용하자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청장의 국유특허 처분·관리권을 발명기관의 장 및 기술의 이전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특허의 처분·관리에 특허권 등의 포기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를 동 국유특허권을 취득한 당해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 수행 등을 용이하게 추진하여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고,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시에 국유특허 활용 홍보 강화 및 무상실시기간 연장 등을 통해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분·관리에 특허권 등의 포기를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장기 미활용 해외 국유

특허에 대해 존속기간 만료 전에 권리 포기가 가능해져서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별문제 없잖아?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은 정부안이니까.

○배은희 위원 아니에요.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을 좀 받아야지요.

수정의견에서 반도체, 정부안에서 한 것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좀 강제해서 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저희는 발명진흥법이 지적권 전반의 진흥에 대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마련할 적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안에서 이렇게 입법을 추진했습니다만 반도체 배치설계는 독자 법률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수정의견은 전체 위상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는 의견을……

○배은희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종혁 위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 문제 말이지요. 그동안 청장님이 보시기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기능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순기능, 어떤 데 제일 기여하고 역할이 있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특허청장 고정식 원래 취지는 과도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 하자는 거였는데요, 사실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게 법률적 판단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화해 위주로 기능 하는 겁니까?

○특허청장 고정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종혁 위원 권고?

○특허청장 고정식 예. 그리고 기속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 수도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배로 늘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한번 홍보도 강력하게 해 가지고 활발하게 해 보자

는 취지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라고 그러면 김성희 위원이 말씀하신 40인 이하의 상한선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허청장 고정식 지금 현행 20인인데 다른 저작권위원회 25명 이런 것으로 봤을 때 40명이면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이종혁 위원 상한선 폐지까지 둘 필요는 있겠느냐, 오히려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특허청에서 주장하다가 철회합니까, 지금?

○특허청장 고정식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 자체는 가지고 가는데요. 이것을 입법기술상 배치설계법에다가 따로 해 가지고 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뭐……

○이명규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 그 말이지요?

○특허청장 고정식 예, 동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6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 6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 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02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제62항 김태원 의원, 배은희 의원, 우윤근 의원, 박민식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예, 중소기업청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설치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를 대학·연구기관 밖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확대하되 그 범위를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를 받고 있으므로 경과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 밖의 센터까지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체계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특례 적용 시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산업등의 시설군'으로 간주하여 공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공장 등록을 위한 건축물 용도 특례의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페이지, 배은희 의원님이 대

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함에 있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현행 '1인'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 결합을 통한 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써 벤처캐피탈의 경쟁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 통과시킨 창업지원법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예에서 보면 공모로 결성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공모조합의 경우에는 1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그리고 사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도 복수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격을 창투사나 외국인투자회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 범위에 창업투자조합 출자,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의 이전 및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경영·기술 지원 등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이는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및 외부자금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전문회사 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회사가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체계자구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연구기관장 승인 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용실시권 부여를 통해 전문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용실시권 부여의 주체는 대학·연구기관이므로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집적지역이 대학·연구기관 내에 조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기관장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주기업의 편리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실공장 설립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실험실공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 보완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운영기관장의 승인으로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주기업의 편리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도시형공장 설치 특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건물 용도를 공장 등록이 가능한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법적 요건이나 절차 등이 미비하므로 특례 적용 대상을 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상법상 특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저자본금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금년 5월에 삭제·정비됨에 따라 여기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비를 하면서 특례규정 삭제에 따라 이를 인용한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등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자구 차원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5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개선

하자는 차원에서 투자를 받고 일정 기간이—현행 6개월입니다—경과한 후에 벤처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며, 보증·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서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여 벤처확인토록 개선을 하고 있고, 창업기업(예비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요건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유치와 동시에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보증·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 또는 대출을 받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자체가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에 대해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출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정안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금 특례요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동 조문을 준용·인용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확인 취소요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벤처확인일로부터 6개월간 확인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투자 유지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은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6번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신 대로 개정안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윤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이것은 좀 과도한 확대 같아서 개정안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민식 의원님 대표발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도 2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본안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배은희 의원님이 만드신 법안, 대학(원)생에게 실험실공장 설립 허용하는 것, 물론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대학 내에 하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종혁 위원 제공 환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지만 대학교수님의 지도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종혁 위원 그리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 시간을 더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대학이나 대학원생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실험실공장을 차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순서상으로 적체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2년 연장해 주면?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처음 시작하는 제도니까 아직까지…… 만일 적체가 되고 창업하겠다는 대학생이 많다면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설치특례 확대, 제18조의3제1항, 지방자치단체 창업보육센터하고 창업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창업보육센터 차이가 됩니까? 거기에 법적 요건·절차 미비 이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제일 차이가 납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창업법에 따른 BI는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면적도 있고요. 최소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 면적이 500㎡이고 그다음에 BI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이종혁 위원 BI를 관리할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단순한 건물관리라기보다도 건물관리를 포함해서 기업주기업에 대해서 자문도 할 수 있는 경영학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또 공동시설이나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그렇게 조건이 맞는 것은 창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 줍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공간 제공 차원에서 임시로 한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이 어렵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혁 위원 지나친 확대이고, 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이 일종의 지방 창업의 어떤 규제책으로, 해소해서 열어 두자는 건데 창업지원법상에 지정된 창업보육센터하고 지방자치 BI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때는 이런 유의 특례를 같이 주는 게 맞지 지방 BI라고 해서 허들을 하나 칠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여쭙 보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는 BI도 저희가 요건만 맞으면 해 줍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국토부에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대학·연구원 밖에 있는 BI도 해 주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취지가 다른 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일부에서는 자유스럽게 허용할 수가 있도록 한 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예외를 뒀 가지고 대학이라든가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안에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기청장의 창업보육센터 지정만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는 문제가 발

생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이것을 정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익 자체가 없다 하는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토지 이용에 대한 체계를 혼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부 용도지역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런 유의 감이 오는데 실익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여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보전지역 외,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외 지역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안 외에도 현재에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어디에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토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허용해 줘야 되는 것 관계없이 중기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토지 이용에 대한 왜곡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용도지역에는 이렇게 확대할 게 아니라 제한을 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이것은 도시형공장이기 때문에 본래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들어가고, 도시형공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상업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용도의 사용에 맞도록 들어가는 것이……

○**이종혁 위원** 아니, 내 질문을 일부 용도지역을 제한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에 이런 확대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느냐 그 얘기예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이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용도에 들어가는 것 관계없이 중기청장이 지정을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봤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내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지요.

○**배은희 위원**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현행법에서는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데 이 수정의 견대로 법이 고쳐지면 도시형공장이 설립되는 예를 들어 주십시오.

지금 국토해양부 의견은 현재도 된다?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렇습니다. 현재도 되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안 됐는데 수정의 견대로 법이 개정되면 도시형공장이 설립되는 예가 어떤 겁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도 도시형공장을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잖아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라든가 연구시설 같은 데는 용도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허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법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주변기기업 이런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창업보육센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도?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법안은 그렇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그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중의 예가 마포구에 있는 마포비즈니스센터인데 그중에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가 14개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말하자면……

○**배은희 위원** 왜 안 돼요? 그게 창업보육센터면 되잖아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현재도 벤처

기업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거기가 창업보육센터가 아니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요, 창업보육센터인데 위치가 대학·연구원 밖에 있거든요.

○**이종혁 위원** 안에 있는 것은 되는데……

○**배은희 위원** 아, 밖에 있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밖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해 주자……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것은 아닙니다, 대학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다른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시설은 도시계획으로 보전녹지라든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용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관계이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서 그 바깥에도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혁 위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개정안 내용이 지금 현재 대학하고 연구기관 안에는 도시형공장 설치특례가 있는데 밖이 안 되니까 이번에 밖에까지도 확대해 주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소위 경제 활성화로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여기 수정의견은 밖에다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부 용도지역에는 제한을 해 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에 지금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면 다른 용도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그 2개,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안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하고가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제도상의 오버랩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이렇게 되지요, 이것은 지정을 하면 중기청장이 토지이용변경권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있어서 여기는 못 들어가는데 가려면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았을 때 현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허가를 할 거

나 말 거냐를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그 규정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종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기청장님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 많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제가 이해하기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업종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형식상 중기청장이 용도변경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형식논리 아닌가요? 업종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특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예를 들면 광주, 대구, 부산 다 하나씩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입주 업체가 그냥 단순 연구만 할 수 있지 거기다가 작은 규모라도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하게 해 달라는 건데 그것을 하게 되면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말하자면 토지이용에 관한 권한을 중기청장 권한이 아닌데 제가 행사하는 게 된다 지금 그 뜻이지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저 지적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니까.

○**배은희 위원** 맞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런데 이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창업집적지역이나 테크노파크는 이런 식으로 예외를 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배은희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지금 어떻게…… 국토해양부에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것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이미, 테크노파크는 개발법에 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배은희 위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용도변경을 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미 용도변경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이종혁 위원** 그게 국토해양부 권한의 침범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 그 얘기지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전체 체계상의 문제다……

○**배은희 위원** 전체 국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종혁 위원** 이것을 조화시킬 방법이 없나?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에도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이종혁 위원** 현행에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명료하게 설명해 봐요,

○**배은희 위원** 마포 거기는 현행에 안 됐다면서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것은 규모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3종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했을 때 허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 면적 같은 것을 아예 안 받거든요. 입지도 그렇고 허가 면적 자체도 안 받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면적 제한을 받습니다.

○**배은희 위원** 도시형공장은 면적이 작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디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아서 이것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밖에 있는 BI에도 소위 말하면 도시형공장 설치를 특례로 해 주자 이게 창업의 활성화이고 경제 활성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 취지는 공감하시지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종혁 위원** 물론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용도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중기청장이 대학·연구기관 밖에 BI를 지정함으로써 인해서 일정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침범 내지는 그런 유의 얘기는 일리 있게 들리는데, 그러나 이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취지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배은희 위원** 그러면 면적 제한을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여기에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배은희 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정했을 때 면적 어느 정도 이하는 다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도?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는 따로 국토해양부에 받지 않더라도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면 도시형공장이 설립되도록 해 주는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까, 그 의견을 조율해서?

○**이학재 위원**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건데……

○**이명규 위원** 중기청장님, 지금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예로 드셨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직원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도 일반주거지역이든 중심상업지역이든 생산녹지든 어디든 간에 조례에 의해서 도시형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포비즈니스센터의 경우에 왜 도시형공장이 못 들어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조례 조사해 봤습니까?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중소기업청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업진흥과장 김형영입니다.

우리가 입주업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장설치가 실제로 안 되어서……

○**이명규 위원** 왜 안 되냐고?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안 된 이유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도지역에 대한 특례이고 두 번째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런데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입지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데 특례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된다는데 그 조례가 적용이 안 돼요?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실제로 여기서 원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조례 적용을 못 받느냐고요. 그게 저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법에 건축물 용도하고 용도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안 해 준다는 얘기네.

○**이종혁 위원** 근거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조례는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확인해 봐야지요. 조례가 어디 조례, 마포구조례로 하나요, 서울시 조례로……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시·구청 조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지 법까지 바꿀 필요가……

○**이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해양부 직원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조례에 해 준 예가 없다는데?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장 김형영** 조례로 하는 경우도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직……

○**이명규 위원** 됐어요,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네.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지 아닌지 관계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나 들어 보면 현실적으로 근거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소위 BI 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을 설치해 주는 정책적 시혜를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놓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소위에서 들어 보니까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관리를 주무부처에서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 또한 틀림없이 중요한 법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도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포 테크노파크 관계는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위치는 대충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연구시설 같은 데는 필요에

따라서 어디든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연구시설하고 공장하고는 틀리지요. 연구시설에서 생산한 것을 팔 수가 없잖아요. 연구시설에서 생산한 것을 팔면 안 되잖아요. 현실을 보시고 얘기하셔야지요.

○**李玲愛 委員** 다 서면으로 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지요. 여기서 결정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종혁 위원** 내가 볼 때는 국토부의 과장님도 배은희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개정안이 가지는 현실적 부분을 원래 국토해양부가 가져야 할 제도적 가치도 같이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나 하면 연구시설 바깥에서 지정해 주는 것하고 거기에 도시형공장 설치해 주는 것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중기청 담당 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필드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BI(Business Incubator)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밖의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에 도시형공장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기업의 활성화나 자기의 기업 명운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은희 위원** 국토해양부에서도 연구시설은 된다 하는 얘기가 사실 소프트웨어나 하이테크는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나 공장에서 하는 것이나 폐수 나오거나 그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연구소에서 만든 것은 팔 수도 없고 또 거기는 판매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연구시설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연구시설은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게 연구시설이나 공장이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존에 깔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업을 할 때 연구시설에서 만든 것은 팔면 안 돼요.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꼭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공장이 특히 소프트웨어 업체가 여기서 도시형공장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실에서 왜 이런 개정 법안이 나왔는지를 검토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기청하고 이것은 협의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리고 그런 의미로 연구시설이나 공장시설이나 환경의 그거 거의 없고, 그런 기본 개념이 있다면 여기에 반대하시지 말아야 되고요. 업종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칙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혁 위원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원칙은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중기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은……

○이명규 위원 잠깐만요……

국토해양부, 제가 반대를 지금 했는데 일단 우리가 취지는 알아들겠어요.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기청에서 이 법안을 내는 이유도 알아들겠습니까?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이런 도시형공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와 봐요. 찾아오고,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광역시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형공장을 만들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를 적당하게 찾아와 보세요. 거꾸로 중기청도……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장 전병국 지금 예외로 되는 곳이 아마 네 군 정도 있는 것으로……

○이명규 위원 지금 조례로 된다고 하니까 되는 사례하고 지역을 한번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중기청에서는 안 되는 사례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의사일정 제58항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

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59항 내지 제6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내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내지 제70항 박종희 의원, 노영민 의원, 임동규 의원, 박상돈 의원, 조승수 의원, 김성희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대표발의)

6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6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6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6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6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

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38분)

○소위원장 노영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먼저 박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생협력 관련 행정기관의 추진실적은 매년 지식경제부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범위를 굳이 이렇게 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 제도가 해제됨에 따라 관련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 이 법에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굳이 규정을 한다면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항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과대로 징수 및 부과절차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수·위탁거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위탁거래 약정 시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 또는 용역 외에 기술개발 부분도 약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포함을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한 경우 수·위탁거래 약정에 따라 기술개발도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항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을 기술개발까지 포함하는 “제조”로 체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이양 신청을 하면 중기청장은 해당 대기업에게 통지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생법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이양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항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일시정지의 강행규정화를 담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해당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일시정지의 현

행 권고규정을 강행규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사업조정제도는 업종의 특성 및 사안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강행규정화보다는 현행의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일시정지 권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 등에게 이행을 명하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권고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권고의 불이행 시 이행명령 및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동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체토론 시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에 따른 벌칙조항 신설은 법률체계상 맞지 않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권고 없이 일시정지 이행명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업조정에 협조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생 차원에서 감세 등 유인책의 강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권고는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벌칙을 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법무공단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조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지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조사를 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전조사 신청에 따라서 대기업의 영업 비밀 및 영업행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정 해당지역 동일업종 중소기업의 동의 식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지역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일정 비율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조정이 서비스업의 경우 특성상 그 영향권이 일정지역으로 국한됨을 감안하여 동일

업종 중소기업을 일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에 영업품목이나 영업시설·영업시간·영업일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행 유통 등 서비스 업종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으로 해 가지고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영업일수 등을 추가할 필요성 있으며, 또한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심의회에서 권고사항을 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공표 및 이행명령 강행규정화입니다.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도록 강행규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상황판단 등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의 임의규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사업의 인수 등 일시정지 권고 강행규정화로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업 등에게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권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시정지 권고는 개별적인 상황판단이 필요하므로 현행의 임의규정 형식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정지 권고 공표, 권고사항 이행명령으로서 일시정지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고,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을 둬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표·이행명령은 대기업 등에게 불이익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상황판단을 위해서 현행대로 임의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분쟁조정 시정명령이나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 미이행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영업행위를 허가한 소관 행정기관과 이행명령 미이행 시 영업정지를

명하는 행정기관 간 권한의 상충이 있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시정지 권고 벌칙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일시정지 권고에 관한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 김성희 의원님 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상생협력 포상자 대상에 유공자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생협력 우수 기업 및 상생협력에 공헌한 개인에게도 포상하여 상생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자구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이미 폐지됨으로 해서 사문화 돼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조정 신청기한 및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일을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 접수 날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대기업 등이 사업 인수·개시·확장하기 전 또는 인수나 개시·확장 이후 9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신청일 이후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규를 명확화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조정 적용 제외 업종 또는 사업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절차가 규정된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

자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동 개정안에서는 사업조정 신청 자체를 배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원래 사업조정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사업조정 신청의 배제 업종이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이런 입법 형태는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허가 또는 인가는 행정청의 사전적인 판단과 재량이 필요함으로써 어찌 보면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등록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다 등록을 해 주어야 함으로써 행정청의 사전적인 판단이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성격상 허가나 인가와 등록이 별개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조정심의회 권고 내용에 영업일자·시간제한·의무 휴일일수를 추가하여 권고사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서비스업의 공급과 관련되는 사항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축소 등이 WTO 서비스무역 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법무공단 자문 결과에 의하면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정지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시 공표를 하고 공표 후에도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고 그리고 이행명령을 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일시정지 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할 어떤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대체토론 시에 별척조항 신설이 법률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보다는 협조하는 대기업에는 상생 차원에서 감세나 어떤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고는 사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행명령을 내리고 별척을 가하

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정비된 법률 용어의 한글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한글화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일부의 체계·자구 차원의 정비가 잠깐 필요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먼저 63항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영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번 임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박상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 1번 일시정지의 강행규정화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만 두 번째 일시정지 권고의 미이행 시 별척 부과하는 문제는 뒤에 다른 의원님 안에서도 계속 똑같은 의견이 내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자율 조정이라는 것이 이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니 만큼 일시정지 권고라 할지라도 자율 조정의 냄새를 많이 주기 위해서 대기업의 자발적 수용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권고를 하고 공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승수 의원님 대표발의 안의 사전조사 신청·조사 및 통보도 전문위원 검토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3·4·5번도 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6·7번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권고·공표·이행명령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임동규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성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건에서 1번·2번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등록의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김성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개정안에 보면 등록 업종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다음에 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의 규정이 등록의 조건이 어떻게 제한되느냐에 따라서 등록이라 할지라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할 필요성이 크다 할지라도, 크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신다 할지라도 대통령령 안을 입법 예고할 때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했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대로 허가·인가·등록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번은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 또 5번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두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견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측이 제출한 70항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었는데 김성희 의원 안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지경부 산업정책관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섭 정책관!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지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등록제로 갈 경우에 사실 내용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등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등록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형식은 등록이지만 사실은 허가에 준하는 그런 허가 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요건을 빼 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SSM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중 규제의 소지가 조금 있

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해서 사업을 개시했는데 또 다시 이 사업조정법에 의해서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사업조정에 들어가서 이행명령이라든가 일시정지 이런 규제에 놓이기 때문에 좀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넣어서 김성희 의원 안대로 하자 그 말이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제가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SSM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보면 상생협의회니 이런 제도가 있지만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상생법에서 말하는 것은 사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혀 손을 못 대는 영역도 이 상생법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 많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지상 이 좋은 상생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소매업 유통은 이 법에 못 가져온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항이 없어도 이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상생법이라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근본 취지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이 법 목적상 배제를 하려면, 어떤 업종은 상생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법에서 명확히 어떤 업종을 규정해 주게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업종을 여기에서 배제를 할 것인지 이렇게 규정에 명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이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명규 위원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된 것 중에 박종희 의원 안·노영민 의원 안·임동규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SSM하고 대형마트하고 관련 있는 박상돈 의원·조승수 의원·김성희 의원 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박상돈·조승수·김성희 의원 세 분이 제출한 안을 왜 보류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SM의 문제가 발단이 된 게 올 여름부터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보니까 이 SSM을 규제할 법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처끼리 협의를 해 보니까 관련 법률은 없으나 우선 급한 대로 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경에서 일단 규제를 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SSM이나 이런 유통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이 하는 생산품목이나 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게 애당초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은 이 법의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 사업조정을 하느냐? 급하니까, 입법이 미비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을 좀 달리해서 보면 중소기업청이 이런 대형마트나 SSM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들어오고자 하는 대형사업자들 이양자를 당사자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재를 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중앙정부인 중기청이 지역주민하고 대형사업자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적

으로 조정한다는 건 맞지 아니하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된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에 사업조정 제도를 삭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중기청이 더 이상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조정권은 현지 사정에 가장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재권을 주도록 예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내리는 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듯이 33조에 보면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만을 권고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막 권고하거든요. 연기해라 어찌라 지금…… 위법이고 월권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결할 게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세 분 것은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여기 답변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다른 답변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통 부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만 잠깐 좀 이해를 구하면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분명히 제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법제처랑 법조계에 자문을 구했더니 일단 유통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이라고 돼 있는 것을 ‘유통시설’로 의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더라는 유권해석은 받아서 적용했다는 것을 참고로……

○이명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위법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런데 이명규 위원님께서 앞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유통 관련되어져 있는 SSM 관련된 것들을 구겨 넣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주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SSM 문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시급한 현안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법체계상 유통산업발전법에다 이런저런 정책적 수단을 다 담아 넣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구조상으로 조금 무리해 보이고 안 어울리는 듯한 법에다 넣을 때는 뭔가 정책적 그계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일단 ‘유통시설’이라든가 ‘영업품목’이라든가…… ‘영업’이라는 얘기를 넣어서 법적으로 외관상으로는 유통산업도 적용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정을 하면 일단 유통산업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일본의 예를 봤을 때도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데서 일단 사전에 강화된 등록 또는 허가제 비슷한 개념 그런 것을 도입하고 그것에서도 만족치 못할 때는 사업조정제도로 가는 그러한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앞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만약에 유통산업법 개정이 잘 되면 현실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에서 유통도 대상으로 삼는다 해도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법체계는 이것이 꼭 유통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기치 못한 많은 업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체계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정비를 해 놓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만들어서 사업조정제도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혁 위원** 오케이.

자, 그다음 내 두 번째 질문이요.

아까 또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SSM

의 진출 규제를 그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에다 일부 이런 조항들을 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만들어 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체계상으로 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 같은 SSM 진출의 규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기구인 중기청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율하고 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종혁 위원** 그런데 우선 그 지적에 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무슨 말씀이나 하면 그 말씀이 아주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규정이 우리 현실 필드에서 벌어지는 것은 대기업 위주, 있는 사람 위주……

예를 들자면 내가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로비를 받아도 그럴 것이고 뭔가 영향력을 입어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구의 장으로서 국회 또 중앙의 여러 가지 규율하는 목소리를 듣고 예를 들자면 이런 조정제도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다 지방자치단체장에다 맡겨놨을 때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잘 보호가 되겠느냐 이런 류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등록요건을 정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마 일차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안 될 때는 결국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업조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안 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자체장들한테 일차적으로 다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장이 그러한 조정을 못할 경우에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취지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도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명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또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 내용도 꽤 구체적 것 아닙니까? 어떨 거라고 봅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기본적으로 이 상생법은 제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약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제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품목 조정을 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사실은 우리 유통법에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이 되지만 그런 제도들이 들어 있고, 이 제도는 또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통법에서 우리가 이런 유사한 제도를 담는 데에도, 현행도 유통법에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사문화 비슷하게 돼 있는데, 사후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영업을 개시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생 차원에서 협력을 한다 이런 차원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고.

여기서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걸 지금은 규율할 수 있는 업종을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업 내용을 여기다 담아주면 이 상생법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고, 서비스업이 이 법에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영업시간 조정이니 품목 조정이니 이런 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원래 있는 제도에 서비스업을 그냥 붙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혀 반대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다 했고, 여기에 또 벌칙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현행도 지금 벌칙으로 권고사항이지만 이행을 명하고 공표를 하고 이행을 안 하면 벌칙을 줄 수 있게, 형벌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그 내용들을…… 우리 또 법안 다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보류해 갖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이명규 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지금 SSM이나 마트에 뛰어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못 할 때 들어간다 이랬는데요. 지금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SSM이나 마트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등록제도 안 돼 있고 허가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역지로 떼어 붙인 게 중기청의 사전조정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조정제도 이것은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고 한데, 무슨 소리하세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허가등록제 하면 사전에 허가요건이나 등록요건의 충족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어요. 등록요건에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넣어라, 또는 주민들 지역발전계획을 넣어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요. 왜 사전에 통제 못 한다고 얘기합니까?

왜 이 법만이 사업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유통산업발전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전 규제가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자치단체장에게 아무런 권한을 안 주니까 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SSM이든지 대형마트든지 뭐든지, 거기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나친 규제는 안 해야 맞아요.

지금 허가제나 등록제를 도입한다면 허가·등록하고 난 다음에 중기청에서 또 사전조정하면 그것도 해야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단체장에게 업무 처리를 맡기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은 중기청은 여기서 빠져라 이거예요.

중기청의 업무 자체가 조장사업이지 규제사업이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러한 규제행정은 중기청의 성격에도 반하니까 조장행정을 하는 중기청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여기서 빠지는 게 맞다 그런 논리입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하면서 허가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면 사실은 이 법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규율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은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기본 철학은 제조업 관련해서 사업조정제도 내용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 이게 논의가 되는데 SSM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면 이 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될 때도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조치가 없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벌칙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벌칙 자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벌칙은 있는데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 형태로 지금 거의 대부분 돼 있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런데 최종결정을 할 때 형식은 임의로 출발을 하지만 임의권고를 듣지 않으면 공표를 하고 공표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행명령을 통해서 벌칙을 주게 지금 돼 있지요.

○배은희 위원 현재도?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현재도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100%가 다 자율조정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을 좀 더 보고, 심사를 보류하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제가 의견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아까 전문위원이 의견 얘기하신 허가·인가·등록 절차하는 그 문제는 등록이라는 용어 때문에 유통산업법하고의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령이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사업조정제도가 제조업만을 갈 수가 없고 사실상 서비스업까지도 이미 포함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가든 이 조항 이외에는…… 이번에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혁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가지고 SSM 진출 관련된 것을 허가제로 하느냐 등록제로 하느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당마다 입장도 다르고 개별적

으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제로 딱 가 버리면 사실은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데…… 이것 허가제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론도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많은 위원들이 허가제로 가자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최종적 그게 허가에 준하는, 장관 말씀하신 대로 ‘허가에 준하는 등록’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걸 가지고 서비스업·유통까지 확장을 해서 이런 유의 것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고요, 법체계상으로. 지금 그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이걸 어디에 담느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교과서적 법체제로 보면 당연히 유통산업발전법에 넣어야지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곧 다가올 그걸 한번 예측을 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허가제가 꼭 되리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지경부 입장이 됩니까?

○이명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질은 거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돌려쳐 봐야……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위원님, 제 말씀은 유통산업법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제를 도입한다 쳐도 이 중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상생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법의 방향과 무관하게 이것은…… 왜 그러나 하먼요 아까 제조업도 예를 들면 산업발전법 같은 게 있어도 제조업에 관한 사업조정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다 쳐도 유통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업조정제도는 여기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현실적으로, 지금 소매점들이 걱정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사업 열고서 들어와서 우리 사업 열었기 때문에 사업조정제도 대상 아니다 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있는 마당에는 유통법과 무관하게 이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형

마트나 SSM에도 아무런…… 이미 현 상태에서는 그분들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명규 위원 자, 청장님 보세요.

박상돈 의원님하고 조승수 의원님하고 김성희 의원님 안을 유통산업발전법의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보류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써 놨는지 제안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법의 제안이유가 뭔지?

‘대형마트의 무분별하게 출점하여’라고 제안이유가 돼 있어요. 청장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이런 SSM에 대한 문제가 입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다음에 손낼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법안을 내든 그건 좋은데 현재 지금 법안의 제안이유는 전부 SSM이에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저는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규정 자체는……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손을 낸다면 다음에 다른 제안이유로 손을 대야지, 이것은 전부 SSM하고 관련해서 제안이유가 된 법인데 이걸 기화로 해서 손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 회기 중에도 이 법이 조정이 안 되면…… 당장 다음달에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딱 해서 오픈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SSM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건데 그것에 관해서는 규제 수단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법에 보면 90일 이후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SSM들이 그런 편법은 적어도 안 쓸 거거든요.

그러한 현실적으로 급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왜냐하면 유통산업법에도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이게 조속히 논의되어서 국회 통과가 안 되면 SSM 진출에 관해서 공백이 생긴다 그런 얘기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산업법도 이번에 통과가 돼서 같이 간다면 그것은 또……

○이종혁 위원 더 좋은 것이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학재 위원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다시 개정돼야 되나요? 상충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별개입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이 극단적으로 허가제로 간다 쳐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학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조기에 잘 매듭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니, 그러니까 상충도 안 되고 또 유통산업발전법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다루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혁 위원 또 다른 개정의 실익이 있다라고 봐진다면 다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없네.

SSM이라든지 유통산업발전법과는 전혀 별개로 이것이 일반제조업 그다음 서비스업까지 확장한다 치고 이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런 보호적 조치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굳이 이것을 SSM이라고 하는 그 예민한 것 건드리지 말고 그것을 따로 딱 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지금 이 법조문 어디에도 SSM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없지요. 그런데 여기 발의 의원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명규 위원 아니, 세 분의 제안이유가 전부 SSM 아납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요. 제안이유는 그런데 실제로 법조문에는……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가 그런데 무슨 다른 얘기합니까?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거 빨리 개정을 서둘러야 되는 실익을 설명해 보라니까요.

○이명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부안 내세요. 사전조정제도에 대해서 정부안 따로 내세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극단적으로……

○이종혁 위원 그 말은 알아들었고, 지금 현재 거명되는 SSM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의 의견대로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것을 뺀 실익의 이유를 좀 들어 보라니까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이 중에서 가장 큰 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SSM이 편법적인 영업 개시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적어도 SSM의 편법 개점은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편법 개점은…… 그 얘기는 결국 또 SSM이잖아요?

○**李玲愛 委員** 90일 조항 그것 말씀이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렇습니다.

○**李玲愛 委員** 그거에서 사후에도 조정할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렇게 되면 적어도 논의를 해서 개점을 하지……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또 SSM이라니까. 그것 말고.

○**이명규 위원** 청장님, 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안을 따로 내세요. 정부안을 내는 게 맞지 세 분 위원님이 공히 SSM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의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걸 기화로 해 갖고 중기청에서 원안대로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중기청의 안을 따로 내세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런데 SSM 때문에 소매점들이 피해보는 게 현실인데 정부안을 내면 내년 봄까지 가면 올 하반기에……

○**이명규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면 12월 달에 심사할 수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나 이미 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그걸 놔두고……

○**이명규 위원**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꼭 필요하면 정부안을 내시라니까!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SSM 관련해 가지고 사업조정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운용을 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저희 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어나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고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을 일단 하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오픈을 하고, 그리고 또

박스 몇 개 갖다놓고 물건을 팔았다고 하고 그걸 전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 해결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일시정지 권고를 하는데 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강행 출점을 하는 겁니다. 강행 출점을 하면 상인들은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해요. 그래 가지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아니냐, 물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제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하루하루가 급하고 지금도 사업조정 신청이 매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 한다 하더라도 등록제가 개정될 때까지도 적어도 실익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이명규 위원** 에이…… 등록제 하면 이 양반아, 지금 얼마 남았다고…… 그 사이 때문에 법안을 개정한다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종혁 위원**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라고 하니까 그러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제가 조금 전에, 불법 개시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 얘기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가 도입된다 해도 법체계의 완비상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의 규정은 그렇게 조정을 해 놔야 됩니다.

○**이종혁 위원** 어떤 법체계의 완비상?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를 들면 지금 불법 출점 같은 것도 꼭 우리가…… SSM만 염두에 두시는데요, SSM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도 똑같이 그럴 우려가 앞으로는 있는 것입니다.

○**이종혁 위원** 청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시라니까요.

SSM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조속히 규제하고 규율하고 해서 하자 하는 것은 이해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됩니까? 이 법체계상으로 봤을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원래가 제조기업 위주로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 그런

SSM 진출에 대한,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정을 넣기에는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유통산업발전법에다 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종혁 위원** 그런데 그 답변 중에, 뭐냐 하면 굳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설사 허가제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이,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SSM 말고 원래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법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개정안이 SSM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 개정안의 실익이 뭐고 어떤 정책적 목표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걸 설명해 보라니까요. 자꾸 SSM 얘기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예를 들어서 이 법이 60년에 도입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유통이나 서비스업이 없던 시절입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그것을 제외하고 얘기해야지……

○**소위원장 노영민** 얘기해 보세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랬는데 지금 이미 유권해석까지 받아 보니까 이 법이 다소 문구상의 어색한 점은 있어도 유통이나 서비스업도 대상이 된다고 법적인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이종혁 위원** 제조업 중심으로 이 법이 처음에는 6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사회도 변하고 등등 하니까, 유통·서비스업 하는 데도 중소기업들이 있고 등등 하니까 이것은 유통·서비스업까지 확장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더구나 사회적 현안도 발생되고 하니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렇습니다.

○**李玲愛 委員**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하다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심의기간 신설? 90일, 예?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李玲愛 委員** 지금 꼭 필요하다는 것,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건 그거잖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도 정비하는 게 좋지만 일단 현안

은 SSM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을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셔도, 그것까지는 상관없는데요.

○**이종혁 위원** 저건 시간 걸려. 저건 시간 걸리는 것 아닌가?

○**이명규 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통과시키자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정비해야 되겠다, 말이 되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종혁 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개정 여하에 따라…… 개정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 이번 상임위를 얘기한 것이지……

○**소위원장 노영민** 너무 길어지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이학재 위원**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상충되지 않고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이 법이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면 손을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균 위원** 필요성이 있겠어요.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혁 위원** 이영애 위원님의 의견을 좀……

○**李玲愛 委員** 지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SSM 말고도 조금 법을 정비해야 될 조항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지금 중기청에서 가장 급하다고 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사업조정 신청 들어오는 것들 중에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개점해 놓고 ‘개점했으니까 우리 대상 아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심의기간을 90일로 정해 가지고 개점 후에도 할 수 있게 그걸 하나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개점하는 업체도 사업조정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될 때까지는 그 제도를 활용해서 편법을 방지하겠다 그거지요. 그 조항은 지금 해줘도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꼭 필요한 것 그것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유통산업발전법 될 때까지 미뤄 놔

도 되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배은희 위원님, 지금 다 입장 말씀하셨습니다.

○배은희 위원 저도 질문이 이종혁 위원님하고 같은데 이 SSM 관련, 유통산업 관련한 것을 자꾸 넣자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원래 법 취지에 맞는 부분만 일단 보고 이 개정안이 필요할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조업 중심으로 했을 때도, 예를 들면 김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이 꼭 개정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성희 의원님 개정안에서는 ‘허가·인가·등록 등의 절차가 규정된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미 그것은 거기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거기에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정부의 명확한 의견을 주시고.

정부는 김성희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지경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등록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없는 걸로 배제돼야 된다,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중기청은?

○배은희 위원 중기청은 들어가야 된다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 지경부하고 같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배은희 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지경부 의견하고 같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반대이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에서 하면 되니까.

○배은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면…… 이렇게 되면 SSM 관련한 걸 빼고도 제조업 중심으로만 생각했을 때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성희 의원님 안은 저는 가도 된다고 보고, 단지 하나 이 법에 어떤 의심적인 항을 넣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업일수라든지 영업시간이라든지 유통에 관련한 조항까

지 개정하는 것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그건 유통산업발전법 되는 걸 보고 다시 재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래 취지에 맞게 제조업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결론을 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혁 위원 전문위원님, 등록을 제외시켜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김성희 의원 안 중에서 등록을 빼야 되는 이유, 결국 그것은 SSM 진출에 대한 피해 대상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예, 여기서 이렇게 대통령령에서 배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제가 되는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해당 법에서 어떤 허가나 인가나 등록 이런 절차를 갖고 있을 때는 그 법에서 해결해라, 이 법까지 가져오지 마라 이런 취지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최대한 수준이 지금 등록입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요건만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이종혁 위원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아무 거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어떤 이런 충돌이 생기면 이 법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생법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유통산업법이 허가가 될지 등록이 될지 몰라.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예.

○이종혁 위원 그런데 예측컨대 허가로 가기가 만약에…… 이것은 100% 예측입니다. 예측컨대 허가로 가는 것보다는 등록으로 안 가지겠느냐, 이렇게 되어진다면 지금 현재 그 허가에, 등록에 관한 부분은 빼 주는 게 형평상 맞잖아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저희들이

사실은 이걸……

○이종혁 위원 내 말이 틀렸습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등록제로 갈 경우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의 효과가 만약 없을 경우에 이것을 시행령에 뒤서 혹시라도 등록의 효과가 없으면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사전조정을 배제하는 업종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의 경우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그런데 그걸 법에다 안 해 놓고 시행령으로 해 놓고 그걸 어떻게 담보로 하나?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이 두 법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는 것하고 사업조정법이, 상생법이 개정된 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등록제로 갈 경우에도 정부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입법례에 보면 포괄위임 입법례도 있거든요

○이종혁 위원 포괄위임의 문제가…… 포괄위임이라는 지적이 맞지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 그런데 그런 입법례가 또 있습니다. 산업발전법에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그것만 결정을 하세요. 이것을 오늘 심의를 해 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법이나……

○소위원장 노영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규 위원 뭘 해야 돼?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지금 지역에서 SSM들이 위장 개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명규 위원 그것은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게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명규 위원 그것 통과시켜야지요.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과시켜야지……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두고 봐야지. 그것을 통과하는 것 전체를 할 수 없다니까.

○이명규 위원 지경부 얘기해 보세요. 지경부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SSM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예.

○이명규 위원 중기청은 원래는 이 SSM 문제에 대해서 개입 안 하는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이유는 현재 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금 넘기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이 돼야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안 넘어갔다고 중기청에서 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다 이거야, 내 얘기는.

중국적으로 내가 이런 것 어떤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법체계상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하는 게 맞지 중기청이 사업조정제도의 어떤 강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지경부의 생각처럼 맡기자 이것입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명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중기청장님은 이것 SSM에 적용하실 거지요?

○이명규 위원 당연히 하지.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당연히 적용해야지요.

○배은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명규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이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이명규 위원님의 지적이……

○배은희 위원 왜냐하면 말씀이 맞는 게, 법이 그러면 엉킨다니까요.

○이종혁 위원 아니, 법이 엉킬 것은 없어요.

○배은희 위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이 허가로 갔는데, 등록으로도 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다 지자체 단체장이 해라 그랬는데 거

기 중소기업 상인들이 반발해서 다시 중기청에다 사업조정 신청하면……

○**이종혁 위원** 아니,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배은희 위원** 왜 별개예요? 마찬가지로.

○**이종혁 위원** 왜 별개의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나도 그걸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법이 60년 전에 제조업 기업 위주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그걸 규정하는 법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제 법 제정일로부터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고 사회도 변화되고 등등 하니까 이제는 유통·서비스업에 관련되어졌던 것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시정권고나 이런 것들을 담아둘 시대적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고……

○**배은희 위원**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겼잖아요. 제조업에 관련해서는 생산 관련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규제하는 게 맞는데……

○**이학재 위원** 나중에 법사위에서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명규 위원** 아니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을게요.

이 상생법의 적용 대상 산업이 제조업만이 아니고 유통산업도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말지요,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이명규 위원** 이의 제기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 이의 제기합니다?

○**이명규 위원** 예, 그것은 제기해야 되는 게……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정부가 유권해석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명규 위원**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얘기는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받은 것이고 지금 개정안처럼 영업품목, 영업시설, 영업시간, 영업일수가 안 들어가면…… 이 법도 유권해석을 받았다 해서 그게 다 합법인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위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까 마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지금 이미 서점이나 그런

데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입법의 불비 때문에 과도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 과도한 것이 아니라 법률공단이나 법제처에 받았더니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라고.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나는 해석하기를 이 법 자체가 그런 시대의 추이에 따라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이나 SSM의 진출이 저렇게 아까 말한 대로 박스 몇 개 팔아 놓고는 전포 끊어서 사업 개시다 이려고 등등 해서 지역의 그것은 머리띠 매고 이렇게 하는 판에 이것을 규율하고 규정할 것이 없으니 이거 빨리 조속히 서둘러서 우선 그런 것들을 유통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이런 부분은, 기왕에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시대적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선 이것을 가지고 그 도구화 수단으로 쓸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다시 이것은 똑같은 규정이 현재 위원님들이 제출한 여기에 저희가 의견 붙인 것에서 자구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자는 얘기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배은희 위원** 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SSM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허가를 해 주었어. 등록을 해 주었어. 그런데 사업조정제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사업조정제도에서 예외로 넣는 것이지요, 사업조정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그것을 빼자는 거니까 등록도 된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저희는 넣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등록제로 했는데 그것이 강한 등록

제의 경우에 지자체장이 등록을 해 주었다 그러면 그런 업종은 사업조정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대통령령에다가 넣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명규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당연히 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명규 위원 그것을 당연히 넣는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령으로 정하니까 중기청의 마음이지. 무슨 소리고 있어요? 중기청의 마음이지 왜 당연히 한다고 그러세요?

○배은희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중기청 마음이다 이 말씀이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玲愛 委員 한 가지만……

지금 사실 이명규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SSM에 이것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확대 적용해 가지고, 다른 법이 없으니깐.

그런데 그중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 지금 위장 출점,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조정심의 기간을 신설한다 이것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위장 출점한 업체도 사업조정 대상에 넣을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유통산업발전법이 되어가는 것을 봐 가면서 하지만 이것은 좀 필요하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지금 여기 중에서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세 분의, 박상돈 의원 안, 조승수 의원 안, 김성희 의원 안이 있는데 박상돈 의원 안하고 조승수 의원 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대부분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성희 의원님 안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등록제 이 부분만, 사실상 이거 하나만 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되거든요.

현재 우리 중기청 말씀이 맞아요. 뭐 포괄위임만 벗어난다면……

○배은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조승수 의원님 안에서 사업조정 권고 내용 보다 구체화해서 유통 쪽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몇 항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종혁 위원 그거 다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배은희 위원 아니, 검토 의견에서 위원장님은 거의 다 조항이 삭제되었다 했는데 이것을 수정 의견에서 사업조정 권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유통 내용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한 내용에도 해당 조항 삭제로 되어 있는데……

○배은희 위원 아니에요, 3번……

○이명규 위원 아니, 들어가 있어요.

○배은희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보신 거예요.

3번은 사업조정 축소, 영업품목·시설·시간·일수 이것은 구체화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이명규 위원 이것을 빼야 돼요.

영업품목·영업시간·영업일수 넣는다는 것은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예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이 법이 이미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내렸다는 것을……

○이명규 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꾸 논의를 할 실익이 없어서 안 되지요.

○이명규 위원 그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하는 것을……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유통산업법이 통과되어도 서점이나 이런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여전히 다른 업종도.

○이명규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영업품목·영업시간·영업시설·영업일수, 왜 그런가 하면 이 법의 취지를 엄격히 말하면 지금 현행 법대로 하면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변호사 아니십니까? 딱 보면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에서 품목 수량 시설인데 거기에 어디 영업일수가 해석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이지.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60년대의 시대정신을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해석하니까……

○이명규 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법의는 논리해석해야지 법에 무슨 시대정신이 있었어요?

○이종혁 위원 그러면 그 조항도 좀 고치지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그 조항도 좀 고쳐야 될 것 같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여기 제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그 조항을 안 고쳐도 정부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만 법의 모습이 약간 좀 덜 아름답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 조항입니다. 90일 조항하고요, 일시정지 권고를 듣지 않았을 때 벌칙을 주는 것 그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실익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이명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SSM에서 중기청이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행정업무를 중기청이 하는데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이명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다 넘기고 중기청은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종혁 위원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지요. 지금 공백 생기는 것을 어떻게든 메워 주어야 되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생법에서 ‘생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생산이라는 개념에 소위 서비스지요, 서비스 용역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방침은 설정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어서 사업조정 권고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명규 위원님께서서는 그것은 입법 미비에 따른 일시적인 편법으로서 정부가 집행한 것이 인정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법 심사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李玲愛 委員 나중에 유통산업발전법 정하면서 어느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면서 중기청은 떼어버리면 되지요.

○이명규 위원 당연하지요, 위원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런데 저희 생각은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과 사업조정제도는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발전법도 있지만 제조업 사업조정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李玲愛 委員 제조업 사업조정은 좋은데 SSM 사업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거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이 상생법이 제조업법이 아닙니다, 상생법이.

제조업에 관한 모범은 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조정은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어도 사업조정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두 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종혁 위원 거기서 활용되고 이제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통 서비스업을 규율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구먼. 나는 중소기업청장의 설명이 상당히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다고 봐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야지. 원래 이 법이 제조업에 규율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더구나 정부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명규 위원 저도 그 말씀은 맞아요. 60년대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바꾸려면 정부안을 내서 바꾸었지 왜 의원들이 전부 SSM을 이유로 법안을 내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바꾸려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이종혁 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얘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말씀이지, 너무 실적에 묻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혁 위원 자꾸 실적에 묻어가려고 하니 그것은 이명규 위원님의 지적을 따갑게 들어야지.

○소위원장 노영민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전문위원은 등록은 삭제하자고 했는데 원안대로 넣지요, 우리 중기청에서도 원하니까. 대통령령에서 나중에 그것이 충돌이 된다 면 거기서 의도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에 갔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법에 못 올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이것을 중기청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경부하고.

○이종혁 위원 이명규 위원님이 그거는 그리로 규정하자는 것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우리가 그 정신을 또 고쳐하도록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록도 빼 버려야 된다고 빼면 이것은 너무 SSM에 포커스가 맞춰진 듯한 그런 게 되어 있다고요.

○이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함정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절차가 규정된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는데 대통령령으로 유통산업을 안 넣어 버리면 등록해도 사업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물론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지요.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유통산업 안 넣고 그냥 해 버리면 또 되는 거야.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뭐 SSM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에게 지나친 규제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렬적이에요. 허가 등록 요건 열심히 충족해서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 놓으면, 이쪽에서 사업조정 덜컥 신청하면 또 그거 열심히……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등록제가 굉장히 강한데 어떤 정부가 그것을 두 번 규제를 하려고 거기에다가 또……

○이명규 위원 아니, 등록은 강하지만 지금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중기청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사업조정에서 받을 수 없다고 대통령령에다가 저희가 정한다니까요.

○이명규 위원 유통산업법에 정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것은 무조건 정하면 되지요.

○이명규 위원 그러면 32조야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박상돈, 조승수, 김성희 의원 세

분의 의견 중에 32조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거는 안돼.

○李玲愛 委員 32조부터 일단 하고 보지요, 뭐.

○이명규 위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그 항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법의 취지가 안 맞는다 이거지.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영업품목이라든지 영업시설, 영업시간 이 부분이 SSM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업도 다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종혁 위원 기타 서점이나 이런 데가 그런 영역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기청의 얘기는?

○배은희 위원 그런데 원래 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장 노영민 제조업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

○배은희 위원 아니요, 그것은 결정 안 했습니다.

그것은 결정 안 했고요, 제조업에서 한 법을 지금 확대해서 하고 하는데 그것을 영업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것을 완전히 유통산업에 관련된 법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은 상생법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명규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업조정이 허가·등록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게 돼요. 허가 요건, 등록 요건 열심히 갖추어 가면 ‘야, 너 영업시간 줄여, 너 영업일수 줄여’ 이것은 허가·등록 요건보다 더한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것을 빼겠다고 이번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항 아니겠습니까?

○이명규 위원 그거 되겠어요?

○배은희 위원 서점은요? 서점은 등록도 아니고 인가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대형서점은 영업일수나 품목이나 시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런데 그것은 해 봐야지요.

○이종혁 위원 그러면 제정의 실익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배은희 위원 사업조정제도가 들어오면 해야지요.

○이명규 위원 아니지요. 서점도 마찬가지로. 서점만 들어오면 전부 다 가거든요. 이 개정안대로 하면 중기청에서 대형서점 보고 ‘너 며칠은 문 닫고 며칠까지 일하고……’

○이종혁 위원 교보문고가 골목길을 치고 들어온다?

○이명규 위원 그런 식이에요.

중기청이 굉장한, 허가·등록보다 더한 권한을 가지게 돼요, 이게.

○이종혁 위원 그때 가서 문제되면 또 개정안 내서 고치지, 뭐.

어차피 권고니까, 권고인데 뭐.

○이명규 위원 권고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말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자는 것, 그것을 강화하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현실적으로 교보문고가 사업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사업조정 진행 중이거든요. 현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권고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공표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행명령 내리고 안 되면 벌칙하자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종혁 위원 그런데 100%가 거기까지 안 가고 조정이 다 된다잖아.

○이명규 위원 100%는 아니에요.

○이종혁 위원 100% 된다고 하던데……

○이명규 위원 진행 중입니다.

○이종혁 위원 벌칙까지 안 가고 거의 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과거 사례에는 다 자율 조정으로 끝이 났다 이거지요.

○이종혁 위원 그래.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법이라는 게 그렇지, 100% 퍼펙트한 게 아니면 우선은 현실에 방죽 터지는 것부터 막아 놓고 그다음에 누수가 나오면 또 가서 개정안을 내고 또 토의하고……

○이명규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영업품목·영업시설·영업시간·영업일수는 따로 논의합시다. 어차피 지금 이거 없어도 된다면서요.

○이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만 우선은 좀 뺐시다. 유보합시다.

○배은희 위원 2항, 5항은요?

○이명규 위원 그것은 하지 말아요.

○이종혁 위원 품목, 시설, 시간, 일수 이것은 제외하고 우선……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말씀을 또 다 들어보아야 되니까……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한 영업품목·영업시설·영업시간·영업일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은희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시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명규 위원 이것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중기청이 없어도 된다고 그러잖아.

○소위원장 노영민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저기, 오후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소위원장 노영민 다시 하자? 나는 가급적이면 밥 먹기 전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명규 위원 무슨 또 오후에 해? 이것 아니라도 지금 바쁜데. 지금 일단 어떻게 결론 내고 치워야지.

○李玲愛 委員 정부에서 수용한 것 전부 해가지고 하나 다시 만들면 어때요?

○배은희 위원 정부는 품목이나 영업일수 등은 이번에 안 돼도 된다는 의견이시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것은 법의 어떤 외관적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배은희 위원 사업조정 내용에서 되니까……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중기청 말대로라면 이 법 없이도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종혁 위원 자,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것만 빼고……

○김재균 위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오후에 합시다.

○이종혁 위원 다음에 그 법적인 미비가 있으면 다시 개정안 내 가지고 추가하면 되니까……

○이명규 위원 지금 되는 게 뭔데요?

○전문위원 문병철 우선 급한 대로 그러면 기일 신청하는 신청기일 같은 것하고……

○李玲愛 委員 32조 심의기간……

○배은희 위원 김성희 의원님 안의 32조 2항, 5항, 6항 정도는 어떠세요?

○**李玲愛 委員**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배은희 위원** 사업조정 심의…… 그러니까 인수·개시 전후에 하는 거지요. 후에도 9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게 제일 필요합니다.

○**李玲愛 委員** 예, 후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지금 그게 제일 급하다는 거니까……

○**이종혁 위원** 그래, 급한 건 해 줘야 돼.

○**전문위원 문병철** 사실상은 김성희 의원님 안이 정부 입장이 담겨 온 안입니다.

○**이명규 위원** 그것은 중기청 입장이 담긴 것이지 정부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지경부 입장은 달라요.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지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하에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똑같습니다, 지경부하고.

○**이종혁 위원** 아니, 지경부하고 중기청 입장이 달라요?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토씨 하나도 안 다릅니다.

○**이종혁 위원** 무슨 그런 콩가루 집안이……

○**김재균 위원** 같다고 그러는구먼.

○**이명규 위원** 자, 그리고 사업조정 신청기한 및 사업조정 심의기간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개시·확장 이후 90일 이내로 하며” 하는 것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사업조정심의회는 사업조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되 필요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 게, 이것은 좀 괜찮은가 모르겠네.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오히려 슈퍼마켓이 질질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배은희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이것도 1년 연장까지도 해 줘야 돼요? 아니,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李玲愛 委員** 그런데 또 꼭 안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배은희 위원** 법에 있으니까 빨리 끝내야지.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1년 추가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래도 어느 법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자, 그렇게 합시다. 정리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김성희 의원님 안으로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李玲愛 委員** 김성희 의원님 안은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 그렇게 한다니까.

○**배은희 위원** 조승수 의원님하고 박상돈 의원님 안은……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어차피 박상돈 의원님 안이 2건인데 하나는 안 하기로 했고 하나는 김성희 의원안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희 의원안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배은희 위원** 아니, 김성희 의원님 안에서 4번은 아닌 거지.

○**이명규 위원** 4번은 아니지.

○**배은희 위원** 김성희 의원님 안에서 1번 오케이, 2번 오케이, 3번 오케이……

○**소위원장 노영민** 3번 오케이인데 전문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으로 하자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예, 그다음 4번은 아니고……

○**김재균 위원** 왜 아니에요?

○**이명규 위원** 4번은 안 돼요.

○**배은희 위원** 4번은 좀 논의를 하자……

○**김재균 위원** 이유가 뭐예요?

○**배은희 위원** 아니, 지금 여태껏 저희가 논의한 게……

○**李玲愛 委員** 제조업 중심으로 하자 이거지요, 이쪽에서는.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안 된 채로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한다면.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4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중기청에서도 사업조정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논의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 박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영업시간, 영업일수 이런 것이 지금 서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러니까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4번은……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업조정에 들어가서 실제 내용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표현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니맥스(minimax)한 개정안입니다, 4번은.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4번은 여기 법에다가 하지 말고……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다만 4번이 개정이 되면 아마 법이 보기에 좀 아름답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굳이 여기에다…… 좀 정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저희가 안 넣어도 되겠다는 뜻입니다.

○李玲愛 委員 예, 안 넣어도 되지요. 논의가 많으니까……

○배은희 위원 왜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또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다시……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법에 넣는 것을 또 왜 반대해?

○배은희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넣고 이것은……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거기서는 더 몰라요.

○배은희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조정 실제 내용이 되고 있다니까 법에 이렇게 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되고 있는데 왜 못 넣어?

○전문위원 문병철 제가……

○김재균 위원 4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문병철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당초에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를 안 하려면 지금 이렇게 개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제조업은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이런 예도 없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서비스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은 분쟁이 생기니까 기일도 지정하자, 1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1항 받고 두 번째 것 받고 세 번째 것 받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것만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3항에 해 가지고 소매업, 유통은 이 법에서 배제를 시키면 이렇게 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을 그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요, 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명규 위원 그리 얘기하면 안 되지요.

○李玲愛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사실상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사기일은 적용을 할 수 있지.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현실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그게 배제가 된다는 거……

○이학재 위원 배제가 되나요?

○전문위원 문병철 여기서 배제를 시켜 버리니까 상생법이 못 온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학재 위원 4항을 안 하면 소매업이 배제가 된다, 유통업이?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3항에 넣어 가지고……

○소위원장 노영민 3항. 등록을……

○李玲愛 委員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해석상 하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면 아예 상생법이 못 온니까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명규 위원 전문위원, 그리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로 하면 거기서는 다 규제를 받았는데……

○이명규 위원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다는데 무슨 규제를 해요?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니까 그 내용이지요.

○李玲愛 委員 넘기자는 거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이종혁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의 추이를 좀 보면서……

○김재균 위원 제일 핵심이구면.

○이명규 위원 핵심은 아니에요.

○李玲愛 委員 핵심은 아니에요.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등록이 핵심이야, 등록. 지금 얘기하는 것은 3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4항이 아니고.

○배은희 위원 아니, 4항.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3항 얘기하는 거예요.  
 ○이명규 위원 지금 3항 얘기하는 거예요?  
 ○李玲愛 委員 3항은 끝났고……  
 ○이명규 위원 4항 얘기하는 거지.  
 ○전문위원 문병철 4항을 빼자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립시다.  
 ○소위원장 노영민 4항이라는 게 뭘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 문병철 영업일자·시간제한……  
 ○이명규 위원 영업일자·시간제한 이런 것들을 안 넣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소위원장 노영민 아……  
 ○전문위원 문병철 이것을 빼고……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이 규정을 빼도 행정적으로 이 규정을 많이 원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약간 이해가, 의견들이 엇갈리시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 주셔도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릅답지 못한 것은 나중에 가서 채워 넣자니까요, 유통산업발전법을 보고.  
 전문위원님, 물론 이것을 다 집어넣으면 아주 딱 마무리가 깔끔하고 이렇게 되는 듯한 맛은 있지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추이도 좀 보자는 의견도 계시고, 그리고 당장 지금 중기청에서 이 법안을 아까 90일 그런 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우선 SSM 불법 진출을 막는 게 정책적으로 시급하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봐서 이것을 다시 집어넣는 게 맞다는 판단이면 그때 가서 개정안 내 가지고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문병철 아닙니다. 우선 그것을 좀 합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에서 SSM을 배제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종혁 위원 아니, 그것을 배제를 안 시키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3항에 넣어 가지고 배제를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혁 위원 어디 3항에 배제를 시키려고 해요?  
 ○전문위원 문병철 대통령령에서 제외 업종으로 지금 규정을 하려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종혁 위원 아, 등록 그 부분에?  
 ○전문위원 문병철 예, 그러면 이 법에 못 가져 온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결과에 따라……  
 ○배은희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만약에 허가나 등록이나 강력한 허가에 준하는 등록이 돼서 지자체 단체장이 승인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사업조정제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그것은……  
 ○배은희 위원 아니, 그것 대답해요. 예예요, 아니에요?  
 ○전문위원 문병철 아닙니다. 유통산업법에서 허가제가 도입되면 이 법이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왜 필요가 없어요? SSM 법이 아니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니, 이것은 SSM 법이 아닌데……  
 ○전문위원 문병철 엄격하게 따지면……  
 ○이종혁 위원 얘기 들어 봤자…… 위원들을 헛갈리게 하네.  
 ○배은희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서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더 있거든요, 꼭 SSM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그랬을 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SSM이 허가에 준하는 등록제로 갔다고 합시다.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면 사실은……  
 ○배은희 위원 아니, 그렇게 돼서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3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 상인 몇 명이 반발을 해서 이것을 사업조정제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조정제도에 다시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아닙니다. 개념이 다른데……  
 ○배은희 위원 왜 개념이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지?  
 ○전문위원 문병철 유통에서 지금 허가제가 도입되면……  
 ○이종혁 위원 자, 전문위원님,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해법을 찾았어요. 잠깐만 계서 보세요.  
 ○이명규 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오.  
 청장님, 지금 3항에 대해서 허가·인가·등록

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조정 신청을 못 하도록 해 놓았지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명규 위원 그러면 허가·인가·등록 중에, 이 등록 업종 중에 유통산업이 들어간다고 지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아, 유통산업이 등록제일 경우에……

○이명규 위원 아니, 허가든 등록이든 허가하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조정이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신청을 못 하거든요.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명규 위원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에 유통산업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유통산업법에서 적정한 규제가 되면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이명규 위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이명규 위원 그러면 허가제가 되든 등록제가 되든 하여튼 유통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들어간다?

○배은희 위원 규제가 안 되면 여기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그렇지요. 규제가 안 되면 여기 들어가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가 되면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이명규 위원 허가·등록제가 되면 유통산업에 대해서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얘기 끝났네.

○이종혁 위원 그러면 4항도 받아 주고 문제없다는 거예요.

○이명규 위원 그러면 4항도 받아 줘야 되네.

○중소기업청장 홍석우 예, 처음부터 저희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혁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안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배은희 위원 4항도 받아 주는 것으로 간 거예요?

○이명규 위원 안 해도 그만인데……

○소위원장 노영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너무 오래 끌었는데 결국은…… 김성희 의원님안을 가지고 오랫동안 했는데, 3항에서 등록을 넣는 것으로 하고 4항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하

겠습니다. 참 힘들었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제7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노영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산업기술단지, 즉 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 TP의 경우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러한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수정의견과 같이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규정과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경영평가제도의 마련 필요성이라든가

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구정리 차원에서 법문상으로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민간 TP의 경우에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청”보다는 “권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도시형 공장 설립 특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동 특별조치법을 개정할 때 07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TP 내에 소재한 입주기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07년 7월 1일 이후에 지정된 TP라든가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한 TP에 입주한 기업에도 이러한 특혜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네 번째,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립과 사립학교가 TP에 보다 적극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기업지원 역량의 시너지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문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보여지며, 다만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우선 첫째, 장기간 사업 수행이 5년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에 정부는 이의 없으세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의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다음에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시행에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구체적으로 인사상으로는 TP 원장들 혹은 거기 관련된 간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 승인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임을 허용하지 않는

다거나 이럴 수 있겠고요. 예산상의 조치는 지금 TP에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일부 예산. 그것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저희들과 대부분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4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권경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제정 법안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단지의 지정이라든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지방투자촉진단지를 신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첫 번째 항목에 보시면 지방의 정의에 수도권과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의 83%에 해당하는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도 동 법안에 의하면 지방에 해당되므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권경석 의원님께서 지난해 발의를 해 주셨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 또 권경석 의원님 실하고도 협의가 즉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내의 의견은 아직 조금 정리가 잘 안 됐고요.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제도들과의 상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수도권 개념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완을 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차관님,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방에 지금 기업이 안 오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이런 뜻인데 이 법이 그냥 무턱대고 안 된다, 또는 부처 간에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명규 위원** 그것 말고 좀 더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개발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이 법이 지금 있는 기존 법률하고 별로 다르게 없고 또 검토보고서 보면 세법까지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대안으로서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내지는 지방 공단에 대해서 좀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국토균형발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면은 좀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의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방으로 다 가지요. 지금 지방에 투자는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수도권에서는 그런 입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으로 가는데 기업의 이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업장을 지방에다 두느냐 하는 것과 본사와 사업

장이 같이 지방으로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의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로서는 우선 지방에 산업의 요구에 합당한 입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공급하고, 아울러서 지방이전정책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문제는 지방이 과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인프라가, 사람 문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국제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함께 같이 발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광역경제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투자단지에 대해서 재정을 대거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기존의 지방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너무나 차별화가 돼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제도의 틀이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의 취지라든지 이 법이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지식경제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법론을 조금 가다듬을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명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법을 심사할 때까지, 지금 지방이전만 얘기하는데 물론 이 법 자체가 지방이전과 외국투자기업 이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마는 지방에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까지도 수도권에 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덧붙여서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내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처 내에 정리가 안 된 의견이라는 게 무슨 의견입니까? 아까 재정 부담, 투자단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국토부하고는 기존 산업단지하고 별도의 새로운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충 문제가 생기고요.

○**이종혁 위원** 여섯 번째 항목의 법인세라든지 이런 세제감면 혜택 관련돼 가지고 기재부하고도 의견이 정리가 안 됩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기재부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지방산업단지하고 지금 권경석 의원님 발의하신 지방투자촉진단지의 경우에 법인세·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방산업단지에는 그런 세제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는 지금 5년간 100%, 2년간 50% 이렇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아까 이명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토균형발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경제가 낙후돼 있고.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지방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계속 집중되고 지방경제는 자꾸 피폐화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런 유의 소위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제정법으로.

그러면 이런 법안의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자면 정리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법안 취지는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좀 스피드를 내세요. 스피드를 내 가지고 세제 문제라든지 기타 조정이 안 돼 있는 다른 유관 부처하고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이 지방 부분은 이렇게 뒤서는 안 되지요. 기존에 있는 법하고 상충된다고 하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보건대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폐된 지방경제는 빨리 어떻게 하든 뭔가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래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권경석 의원님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의 조정안도 설명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정리 안 된 의견은 빨리 정리하시고 기존 제도 상충 문제들도 빨리 검토해서 가지고 상충이 안 되게끔 합리적으로 보완해서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성격의 취지를 살려서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4시50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행사금지 대상에서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3조를 삭제하려는 겁니다.

먼저 대외무역법 제42조 관련된 것은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개정할 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정이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삭제됨에 따라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의 조항을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는 지난 2005년에 본 특별조치법 개정 시 착오로 잘못 인용을 한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불 때 안전운행 확보라든가 운송질서 확립 등 국민생활의 불편해소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종혁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우선 중복조항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그동안에 입법착오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금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그쪽에서 들어온 민원서류가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이종혁 위원 그건 자기네들 이해관계고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애를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소송 걸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날 패소하고, 국민들은 운임……

○이명규 위원 그러면 일단 차관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명규 위원 일단 여기 들어온 거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게 23조제1항제9호에 명시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는 게 상당히 규제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범위가 넓어서 행정편의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혁 위원 더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인식은 이 조항이 살아 있음으로 해 가지고 평소에 여객운송을 할 수 없는 콜밴, 이런 데가 불법으로 지금 택시영업을 한다거나 여객사업자들이 노선이나 운임이나 요금책정 같은 걸 하고 잘못된 걸 시정조치를 할 수 없게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거든요. 이걸 기업활동 규제를 너무 완화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9호에 있는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저희가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명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 지금 이런……

○이명규 위원 예, 그런 이유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면 지금 1호에서부터 8호까지를 쭉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요. 그 외에 경영상에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이 저는 특별히 그 9호에서 따로 정할 사항들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명규 위원 그러면 뭐 9호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됩니까?

지금 마치 차관 얘기는 9호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같이 들리는데……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게 되니까 9호에 대해서는요, 그게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그 9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보건대는 공익적 목적으로 봐서 조금도 그게 모호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그것이 모호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이 무리한 적용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소위 말하는 법체계나 소송법을 통해 가지고 이걸 얼마든지 구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법규정의 미비 내지는 지난번에 착오로 인해 잘못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자기네들의 소위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계속 이 조항을 가지고 악용을…… 이 조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그게 전부 다 국민들 불편으로 귀결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모든 행정기관이나 기타 이런 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패소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리고 국민은 국민대로 불편하고,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이 조항은 필요한 조항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 의사일정 제3항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14시56분)

(14시59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연구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도입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구개발부담금 관련 규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부담금 폐지 방침에 따라 2013년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만 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일몰제를 미리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 날짜가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자구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이 조항은 아시는 대로 현행법에서는 유선통신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지난해부터 매년 0.1%씩 감면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부담금 부과를 해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고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부칙의 일부 자구수정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하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기에 때문에 순서를 조금 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부 의견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8.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임동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고 임동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우편환 범위를 전자적 송금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행 우편환법이라는 것이 우편환이라는 증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개별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별조항들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수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정 또는 전부개정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만국우편연합조약의 국제조약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편환 요금반납 우체국 확대 및 보증인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는

6.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대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손해배상면책사유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우편환의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를 국가의 손해배상 면책사유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음은 정부안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 차원의 개정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임동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2조 전자적 송금서비스 취급은 저희들이 필요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문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체국에 가서서 경조환을 이렇게 지금은 붙이시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려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불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혹은 현금 또는 우편환, 이렇게 방법을 선택해서, 계좌이체도 우체국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편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증서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럼 그 증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법체계 정비가, 다른 조문이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2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입법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구요. 나머지 조문에 대해서는 현재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이 우편환은 전자서비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여기 관련 개별조항이나 전체적인 개정 또는 전부개정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우편환 증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편환이란 함은 전자서비스…… 이것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전자우편환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용어는 없지만 그런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법 개정에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편환이라 하면 전자서비스로 하는 전자우편환 개념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되시죠? 이게 전자우편환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런 전자서비스를, 여기의 우편환이라 하면 이런 전자서비스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범위를 좀 늘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장 서흥석 위원님,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입니다.

지금 임동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편환 개념에 기존의 환증서에 의한 배달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이런 걸 포함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편환법이 우편환증서에 의한 그런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당 조항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는 그건 빼고, 그걸 삭제하고 다른 조항을 우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혁 위원 전부 개정해야 된다?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예금사업단장 서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15시06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유 또는 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연장할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토지에 한해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건물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5년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연계해서 건물에 대해서도 20년의 범위 내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국·공유 재산 전부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기보다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에 한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도 기부채납자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시사업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첫 번째 항에 국·공유재산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토지나 건물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요즘에 전시장의 시설을 보게 되면 토지, 건물 이외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식 관람석이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토지나 건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기계장치에 대한 장기임대권도 같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전시장 운영에 바람직하겠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 재산임대의 범위를 관리해 나간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임대가능 범위를 조금 탄력적으로 토지, 건물 이외의 기계장치 같은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국·공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EXCO, 부산의 BEXCO는 지난 4월 1일에 기부채납이 다 끝났습니다. 기부채납이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앞으로 BEXCO는 20년 동안 부산시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전시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고 지금 김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부채납자가 아니라 그냥 전시사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로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BEXCO라든가 KINTEX라든지 혹은 지방에 짓고 있는 전시장들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료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들로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모든 전시사업 단체가 아니라 국유재산 등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 임대료를……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전시사업자 단체 등에게 부과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회 그다음에 전시사업자단체, 무역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주최사업자, 이게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그런 단체 중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거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공짜로 임대를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배은희 위원** 아니죠. 임대하고 사용료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임대료는 따로 주는 거고……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배은희 위원** 임대를 하는 것이랑……

**○입법조사관 김성완** 국유재산법에는 임대료를 사용료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같은 개념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전문위원, 토지나 건물 이외

에 기계 장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지?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부착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년, 5년의 기간을 정해서 대부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도 있겠지만 국유재산법의 취지로 볼 때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절충해서 중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토지와 건물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학재 위원 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기간은 20년으로 하고요.

○이학재 위원 그런데 전에는 왜 건물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5년으로 했지요? 그 이유는 뭔가요? 왜 짧았나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현재 국유재산법에 토지는 20년간 임대되고 건물의 경우는 3 내지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었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그때 당시도 너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토지만 우선적으로 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님 말씀취지에 제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는 아닌데 이렇게 건물의 임대기간을 5년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장기임대에 대한 어떤 우려를 생각해서 3에서 5년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토지와 건물 임대를 맞추는 것은 맞는데 10년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가요?

○소위원장 노영민 현행법도 20년입니다.

○이학재 위원 토지가 20년이고 건물이 3에서 5년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맞추되 10년 정도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나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런데 전시장을 상정해서 생각을 하시면 백스코가 토지는 부산시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저희가 지었던 말이지요. 건물은 저희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버렸습

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하나로 붙여져 가지고 20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고, 만약 부산시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인 돈은 건물 짓는 데 1000억이 넘게 들었지요. 그래서 기부채납한 경우에 20년 정도 장기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쟁점은 건물하고 토지만 하느냐, 아니면 밖에 보면 야외 전시를 하기 위해서 크레인 같은 것도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고……

○이종혁 위원 야외의 크레인 그렇게 개별적으로 한 개씩 짚어버리면 문제가 간단해 보이는데 수석전문위원의 문제 제기는 그런 개별적 사안의 한두 개를 위해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범위를 이렇게 늘려놓으면 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李玲愛 委員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국·공유재산 중에 토지·건물 빼고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토지·건물 외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선박 기계 이렇게는 돼 있고요. ‘선박 기계 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玲愛 委員 이렇게 해놓으면 뭐든지 20년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면 토지·건물로 한정을 하시고 나머지 기계류는 별도로 저희가 임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종혁 위원 전제로 깔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국유재산법에서 임대기간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한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도 국유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제9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15시14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개정안에서는 유가완충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특회계의 ‘용자 및 유가완충계정’을 ‘용자계정’으로 변경하고 유가완충준비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의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이 그동안 04년 이후 추가 적립이 없고 사용처도 없이 그냥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용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의 전출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용자계정의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전출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1796억 원이 용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전출 세입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부칙으로서 그동안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법 시행일에 에특회계에서 한국석유공사에 출자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부칙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완충제도의 폐지는 찬성하지만 적립금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부칙만으로 바로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예산조치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법 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국고에 세입으로 조치를 한 다음에 쓰는 것

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유가완충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향후 석유수급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저희들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석유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자계정에서 투자계정으로 전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것을 한국석유공사 출자금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규정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일단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세출예산을 통해서 석유공사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부칙 제1항을 저희들이 수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금융기관 예치 만기일이 2010년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저희들이 이자 113억 원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예치를 풀고 그것을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차관께서 말씀하신 최고가격 지정으로 인한 석유사업자의 손실 보전 지원 근거 신설은 다음 의사일정 11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유가완충준비금 정책적 실효성 다 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기본적으로 오래 전에 유가 자유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가의 변동폭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유가완충준비금을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저희들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외 자원개발이라든지 충분한 양의 석유 비축, 그다음에 유류세

탄력세율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석유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적립한 돈이 7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으로 저희들이 유가 완충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유가 완충하기에는 이 7000억 가지고는, 이 돈은 별 의미가 없는 규모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예를 들면 저희가 근 20년 전에 걸프전 당시에 한 번 손실보전을 하는 데 1조 1300억이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명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장님 다만 한 가지 말씀만 올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원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15시2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이 사항은 방금 의결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유가완충준비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 시 입게 될 석유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기 때문에 방금 의결된 예특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 이것도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제11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윤성 의원 대표발의)**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2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제12항~제17항 김영우 의원, 이윤성 의원, 이명규 의원, 유성엽 의원, 이종혁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신설 등 발전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PS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날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행령에의 위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관해서는 외국레 등에 비추어서 한국 전력거래소 등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는 최대 130%가 외국레에 비해서 낮은 비율이어서 실효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또 수납된 과징금을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세입 재원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기준을 ‘총 건축공사비’ 기준에서 ‘에너지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은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다만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인증제를 고려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을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우 의원안과 정부안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를 임의신고제로 정부안에서는 변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제로 변경 시 기업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지므로 기업별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전체위원회에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윤성 의원안과 이종혁 의원안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현행 제3조로 인해 해외로부터 수입할 신재생에너지가 배제될 염려가 있으므로 동조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명규 의원안에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영구시설물 축조를 토지 외에 건물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부처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부처 협의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일정한 석유대체연료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유성업 의원안에 대해서 이 법 시행령에도 이미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우선 제1항에 지적하신 시행령에의 위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째, 발전사업자인지 판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전사업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급의무량의 상한 내지 하한의 범위는 조금 탄력성이 저희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2012년까지 어느 정도를 여기다 충당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기술의 발전 추세라든지 혹은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그 목표를 조금 낮출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탄력성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공급인증기관에 전력거래소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22쪽의 평균 거래가격의 130% 이내 과징금 부과 최대 폭이 좀 낮지 않으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150%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으로 들어온 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입 재원으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법과 인증 문제가 겹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법에 담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겠다고 정부 내에서도 결론이 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국토부의 규정과 하위규정을 잘 조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항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명이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설치하는 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최철국 위원님 말씀하신 오해가 좀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항·7항·8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저희들 의견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과징금의 부과가 전에 보니까 한 2배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데 200%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강제적으로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어느 정도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일하는 것이 상당부분 리스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의 예라든지 이런 데 비추어서 150%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아, 외국에도 한 150% 정도 하나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개 150%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의 텍사스주가 이학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50%를, 처음 시작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선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재균 위원 공청회에서 RPS제도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낮은 국산화율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RPS 의무 이행을 모두 저희가 풍력으로 설비를 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전체 전력량의 2.5%를 2012년에 한다고 그럴 경우에 누적 투자비가 약 4조 9000억 정도 들게 됩니다, 전체를 풍력으로 다 했을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오느냐? 연평균 0.48%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전기요금 인상이?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2022년까지 저희들이 가정을 했을 경우에 2022년도에 RPS가 10%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년 0.48% 올라가 가지고 누적으로 한 1조 9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체토론 때도 김재균·최철국 위원님께서 RPS 도입 외국의 실패 사례들을 감안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 RPS 제도가 왜 실패했습니까? 아무나 아는 사람이 대답해 봐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전문가한테 답변을 미뤄도 되겠습니까?

○이명규 위원 전문가가 누구이신데요?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과서기관 홍순파 신재생에너지과 홍순파입니다.

외국에서 RPS제도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된 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 경제성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 보급이 위축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국 같은 경우에 2007년 정도 돼 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 할당하는 방안을 마련했었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명규 위원 신재생에너지원 간에 차별화가 생긴다 이런 얘가지요? 한쪽으로 몰리게 된다. 풍력이면 풍력, 태양이면 태양,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된다, 그래서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개발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과서기관 홍순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골고루 발전시켜야 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골고루 안 되고 특정부분만 발전해 가는 그런 사례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명규 위원 그렇지. 하기 쉽고 경쟁력 있는……

○**이종혁 위원** 그것을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신재생에너지과서기관 홍순파** 예.

○**이명규 위원**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발전차액제도를 믿고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뭐 보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지원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사업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사업 승인이 되면 발전차액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미리, 법을 좀 빨리해서 미리 예고를 하자는 뜻에서 법안을 빨리 제출했구요. 시행은 2012년부터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2012년도에 시행되면 그 이후에도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제도에 따라서 계속 받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언제까지?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것은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5년간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15년?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15년간 지원받도록……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원래 감가상각하고 투자금 회수하는 게 20년이라고 그러던데?

○**이명규 위원** 원래 처음부터 15년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원래 처음부터 15년간으로 알고 들어온 사업자들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계약을 다 15년으로 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소 사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에 관한 기술개발을 한 기업들은 지금 시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가중치를 두든지 별도 할당을

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3배나 비싼데 가중치를 얼마나 주시겠어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당하는 방안이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2012년에 120MW, 150MW라든지 시장 상황을 봐서 충분히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정도의 할당량을 책정할 계획이고요.

○**배은희 위원** 그 할당량을 누가 가지고 잡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 할당량은 120MW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배은희 위원**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태양광 관련 기술개발 한.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저희들이 120MW를 할당하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120MW라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기술개발 한 것을 사 가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정부에서 할당량을 정하면 그 할당을 누가 채워 가나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의무를 받는 발전사업자들이 정합니다.

○**배은희 위원** 그 발전사업자들한테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렇습니다. 2%를 하되 태양광에 대해서는 얼마를 사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0MW라면 발전사업자한테 각각 개별적으로 세분해서 할당을 하시겠냐?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렇지요, 2% 중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얼마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신·재생에너지원별로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이 해서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은희 위원** 또 다른 하나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하나는 가중치를 두는 방안인데요……

○**배은희 위원** 가중치는 어느 정도예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태양광이 어느 정도……

○**배은희 위원** 대충 어느 정도로 가중치를 두세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지금 태양광 가격이, 발전차액 가격이 풍력이 120원이면 태양광이 약 6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2012년에 가서도 그 정도 가격차가 난다면 그 정도의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5배 가중치를 두겠다?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예.

○**배은희 위원** 다 시행령에 들어갑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李玲愛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본이 RPS 하다가 금년에 법을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FIT로 가더라고요. 미국도 지금 RPS 하던 주들이 자꾸 바뀌요. 그리고 FIT로 가는 통일법안도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것 왜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일본은 태양광 가정용에 대해서만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FIT로 팔 수 있도록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李玲愛 委員**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RPS에서 FIT로 가더라고.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일본은 RPS하고 FIT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FI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이종혁 위원** 그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일본이 FIT를 먼저 하다가 FIT 제도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RPS 제도를 도입해서 쓰다가, 그렇게 되니까 태양광 부분이 위축되니까 근래 와서 태양광에 관한 한 FIT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혼용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일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나라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이종혁 위원** 일본은 그럴 거예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RPS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용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태양광발전 좀 더 하기 위해서 남은 전력을 FIT로 사 주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이종혁 위원** 내가 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선 RPS 제도 도입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찬성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입은 찬성하지만 이것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차원으로 만약에 거론이 됐으면, 예를 들자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기타 등등 필요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FIT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형적, 원래의 정책적 취지와는 다른 유의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FIT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산업을 키우고, 다시 말하면 기술을 육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FIT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작 이런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도입을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태양광 발전에 관련되는 기술개발 산업 발전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모듈판 수입해서 조립해 가지고 전기 발생해 가지고 한전에 팔아서 발전차액 뜯어먹는 재미에 왕창 몰려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천몇백 억 해 놓은 것이 몇 년 만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다 하니까 지금 'FIT 제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RPS 제도가 역시 정책적 취지는 좋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그와 같은 원래의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관련 산업기술을 키워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 내지 산업을 해외에 수출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봉이 김선달처럼 제도 이용해 가지고 정책자금 뜯어먹는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물론 이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의무자는 하나로 픽스하는 것은 설정이 됐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발전사업자로 하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발전사업자로 한정을 하고, 아까 이영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FIT를 계속 하지 그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이종혁 위원** 왜 계속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FIT 제도를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정작 그 과실을 따먹고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발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더라……

RPS 제도가 그런 유의, 예를 들자면 지적된 것이 이런 사항 아닙니까? 발전사업자로 고정이었다고, 그러면 이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도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기술개발하고 뭘 투여하고 등등해서 자기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선기능으로 해 주면 좋은데,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신·재생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서 채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랬을 때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RPS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 산업발전에만 중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의무자 거기에만 유착이 되어 가지고 결국 이 산업발전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제도의 제일 부정적인, FIT의 전철을 밟는, 우리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제도가 이 법안에 녹아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시행령에서 다 하겠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법적인 완결성도 좀 떨어졌고, 숙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다 정리를 다시……

○**소위원장 노영민** 아까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명규 위원** 다음에 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할 때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진전된 것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 RPS 도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RPS 도입한다’ 딱 한 줄만 하고 나머지는 몽땅 다 지경부장관의 고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는 얘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나왔지만. RPS 제도에 대해서 법안에 규제를, 예컨대 공급의무량의 상한 내지 하한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것이 있어야지 ‘RPS 도입한다’ 그냥 끝나 버리면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영에다 한다’ 그것 너무 포괄위임입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런데 위원님, 공급의무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무량을 과도하게 줘 가지고 부담을 주게 될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법에 정해 놓을 경우에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법에 못 정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종혁 위원** 차관님, 기술변화 속도에 따른 그런 유연성을 시행령에 담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얼마든지 시행령 기술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RPS 제도 도입을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RPS 제도가 신·재생 촉진·이용, 우리 산업발전, 기술발전 이런 측면에 부합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지난번 FIT 제도와 같은 그런 유의, 겉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발전차액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태양광산업 발전시킨다, 정작 태양광산업 기술개발하고 등등 하는 데 혜택 돌아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시행령에, 지경부장관 그것으로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법에 그 정신과 제도를 분명히 담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담겨져야 돼요, 고민해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내지 제17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15시46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이 개정안은 현행법 제 11조의 전기공사의 분리발주제도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제일몰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분리발주제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타당성 재검토로 전기공사의 특성상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불안감 조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분리발주제도가 계속 존속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공사만 반드시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에서 규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규제를 일몰제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일몰제 취지에서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중소기업 영향평가 받으셨어요? 이 법 개정하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받으셨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견 제기는 없었습니다.

○배은희 위원 전기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게 전기공사사업자들이 다 중소기업자들이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대부분이 중소기업자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분리발주를 하는 건데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불안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전기공사 업체와는 협의를 했고요, 5년마다 하는 것은 사실 5년 동안 분리발주를 안 건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시로 대형 건설사에서 분리발주가 문제가 있다 해서 수시로 이 문제를 제기 하기 때문에……

○배은희 위원 분리발주를 절대 없애지 못하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5년 해 놓으면 5년 동안은 분리발주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건다는 그런……

○배은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위원장 노영민 5년마다 한 번씩 데모하라는 얘기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지금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합발주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명규 위원 지금 분리발주가 전기밖에 없습니까? 옛날에는 조경도 있던데.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통신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전기하고 통신.

○배은희 위원 소프트웨어도 분리발주 있고, 왜 분리발주가 전기공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지요.

○이명규 위원 조경은 분리발주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조경은 건설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통신만 분리발주예요?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소방은 법만 만들어졌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주로 전기하고 통신입니다.

○이명규 위원 분리발주 안 하고 통합발주 하면 결국 이익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대형 건설사가 가지고 갑니다.

○이명규 위원 대형 건설사가 이익 더 가지고 가지요, 중소기업들은 손해 보고.

○지식경제부에너지지원실장 김정관 그래서 저희들도 분리발주가 저희들 입장이고요, 사실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통합발주안을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발주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이명규 위원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이 어떨지……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범도 의원 대표발의)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0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내지 제25항 주성영 의원, 허범도 의원, 노영민 의원, 이명규 의원, 김소남 의원, 손범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먼저 각각의 의원 대표발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영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먼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기준을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의 기준 및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률로 규정할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의무를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급관 연장 100m당 가스공급신청가구가 20가구 미만인 경우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19조의 보편적 공급의무를 실질화하고 자의적인 공급거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의무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중에서 지자체별로 도시가스 수요 등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저 공급의무가구의 구체적인 수는 시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공급

의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이 가스공급신청가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급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성도 없는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강제하면 과도한 시설분담금으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 취지에 반할 수 있고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요금과 시설비용부담액 산정 근거자료의 제출과 공개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매년 그 기준을 법정화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등 요금산정의 적정성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간기업의 원가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회권을 이명규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 심사와 관련해서 참여연대에서 방청을 신청해 와서 두 사람이 방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주민대표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 6시간째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 심사 이후에 이 법을 우선 심사해서 주민대표의 편의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민 소위원장, 이명규 위원과 사회교대)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우선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기준을 법에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견이 없습니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기준 등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급규정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은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보조 용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에서도 저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었고, 전체적으로 다른 연료 사용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정부로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금과 시설분담액 등의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요금이라든가 시설분담액이 현재 공공요금 산정기준 또 공급비용 산정기준들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배은희 위원 검토의견하고 정부의견하고 같은 거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주성영 의원님 경우에는 검토의견하고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저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러면 20항부터 22항까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다음은 허범도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먼저 공급규정의 비치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급규정은 실질적으로 약관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사용자의 계약상 정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과의 균형상 공급규정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의 직무 성실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제29조제7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위임조항으로 개정 취지와 반대로 안전관리자의 직무 성실의무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술적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부칙을 개정해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규정은 지난 2007년도 이 법을 개정할 때 부칙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착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다가 07년 4월 4일 이후에 가스공급 유형을 전환한 경우에는 분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범도 의원 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안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가스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시설이 설치되는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같은 그런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가스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조항이 시설분담금을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개정안처럼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본문에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가 분담금을 분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가스충전사업 관련 조문을 고압가스사업법에서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내용 변경 없이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손범규 의원 안과 김소남 의원 안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도시가스요금의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보여집니다마는 08년도 기준으로 할 때 도시가스 매출액 기준 약

552억 원 내지 1842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앞서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용가스 도입·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어제 11월 25일 저희 전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가스공사와 일본 간의 도입가격의 차이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와 가스공급을 독점하는 나라와 경쟁하는 국가 간의 가격 차이에 대한 분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이 법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우선 허범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20조의2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개정안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적용례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내신 다른 수정의견이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가 시설분담금을 분담하도록 본문을 개정하는 편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입법 조치지만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을 일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범규 의원님, 김소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신용카드 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개 1.5%

에서 2% 정도 되는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에 아마 도시가스사업자들이 현재의 마진율에서 상당히 감당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도 체납된 것 같은 것들을 직접 창구에서 낼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성한 자료를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자원실장이 쟁점으로 제기하셨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입가격 차이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어제 공청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입가격 차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9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다소 낮았고 99년부터 03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노조는 99년 이후에 우리 도입가격이 일본보다 높은 이유를 정부가 99년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도입계약을 불허했기 때문에 국제 LNG시장의 좋은 시기를 놓쳐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99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가 일본보다 다소 낮은 시기를 보면 이때 도입된 물량은 90년대 중반에 계약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99년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2004년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입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중요한 이유는 일본과 한국 간 도입계약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도입계약 방식 S-Curve라는 게 있는데 S-Curve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가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유가 상승 시에도 도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계약 조건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계약조건을 일찍이 포함시켜서 유가 급등기에 낮게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

우에는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S-Curve를 도입하기 전까지 가스공사는 이 S-Curve를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 시에 속수무책으로 도입가격이 올랐던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초창기 LNG 계약 물량이 들어오던 시기로서 셀러 입장에서 다른 수입국이 별로 없었고, 생산물량 해소 및 신규수요 창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싸게 공급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도입가격이 높은 이유를 가스산업 구조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고, 더구나 가스공사가 정부에 2000년부터 2004년 기간 중에 장기도입계약을 요청하거나 정부가 이를 불허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스공사 노조가 장기계약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면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이 청구를 기각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전용 경쟁 도입이 가정용 요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전용이 분리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2005년과 2007년에 도시가스요금은 발전용이 분리될 경우에 2.75원/㎥과 0.97원/㎥이 상승하고, 2006년도는 2.86원/㎥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전용이 분리되더라도 가정용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GS칼텍스와 가스공사의 호주 Gorgon 프로젝트 도입계획인데, 최근 GS칼텍스가 호주 Gorgon 프로젝트에 대해서 Chevron과 LNG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가스공사는 HOA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LNG 도입가격은 영업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GS칼텍스의 도입가격을 호주 언론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t당 약 800불로 일본 구매자의 계약보다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가스공사는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에 가격 동향이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배은희 위원 포스코가 S-Curve를 도입해서 싸게 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스공사는 지금 S-Curve를 적용 안 합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가스공사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싸게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싸게 들어오더라도 포스코에 비해서 비싸다는 뜻이지요. 어제 저희 장관님이 설명하신 대로 같은 S-Curve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같은 시기에 포스코가 들어온 가격보다 가스공사 도입가격이 더 높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일본과 비교하면서, 일본은 일찍이 S-Curve를 도입해서 유가 급등기에도 LNG 도입가격을 낮추었는데 가스공사는 포스코가 S-Curve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계약조건에 S-Curve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가스공사가 유가 급등기에 LNG를 비싸게 도입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2000년부터 2004년 기간 중에 가스공사가 정부에 장기도입계약을 요청하거나 정부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놔는데 노조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가스계약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승인을 요청하지 않도록 한 것 아닌가요? 가스공사에서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도입을 못 했다고 하고……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청구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써 놔는데, 가스공사 노조가 그 당시에 정부가 장기계약 체결을 못 하게 했다는 것을 이유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 감사청구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김재균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학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장기계약을 그동안에 안 했다, 그래 놓고 지금 정

부 탓으로 돌린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저희들은 팩트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학재 위원** 진실게임도 아니고……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어쨌거나 가스공사가 그 당시에는 장기계약을 못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스공사의 업무 태만입니까, 안 그러면 민영화의 영향인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저희들은 민영화의 영향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민영화를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도입 계약을 분할해서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구조개편의 내용이었고, 그 당시는 시장조건이 바이어스 마켓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스공사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2003년과 2004년 기간 중에 필요한 물량은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를 보다가 놓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계약은 했습니다, 중기계약은.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러면 단순히 가스공사가 이게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네요?

○**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태만히 했다가보다는 가스공사 나름대로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가스공사 이야기 한번 들어 봐야 되겠네요.

○**이학재 위원** 그것은 당연히 들어 봐야지요.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가스공사가 아주 영 바보 같은 사람 돼 버렸는데……

○**이학재 위원** 가스공사 측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런데 지금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 공방의 문제와 앞으로 발전용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일부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과 상호 연관성이 어떤지 제가 잘…… 저희들은 사실 가스공사의 주장 같은 것이 잘 이해가 딱 안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지금 우리 지경부에서 제일 크게 주장하는 게 일본보다 우리가 도입 원가가 높다, 높은 게 바로 민영화 내지는 선진화라고 그랬습니까? 그 계획 때문에 지금 가스공사는 높아진 거다 얘기하고, 어쨌거나 지경부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무조건 일본보다 높다 그것을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삼고 있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러니까 민영화 내지는 경쟁 도입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가스 도입가격이 변동했다 이런 주장이, 그게 실행된 것도 아닌데 그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학재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장기 도입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동안에 가스공사는 장기 도입을 못 했고 그때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도입 했던 K파워나 포스코나 이쪽에서는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점의 문제이지 이게 경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가장 커다란 논리가?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학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배은희 위원** 다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하세요.

○**배은희 위원** 정부안 말고 23·24 안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할 수 있도록 한 거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납부율이 높아질 텐데 반대로 납부율이 높아지지만 수수료 때문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순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이 검토의견이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익률은 낮아지더라도 납부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토털 섬(total sum)이 커지잖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런 의견은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숫자로 잠깐 말씀드리면 08년도 도시가스사의 매출액이 모두 12조 3000억 원이고요, 그중에 매출이익이 한 4000억 원 됩니다. 그래서 매출 수익률이 지금 한 3.25% 정도 이렇게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한 1.5% 정도로 적용했을 경우에 전체 고객의 30%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다 치면 수수료로 552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0억 이익 중에 약 13%를 카드사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그

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배은희 위원 미납은 얼마나 되나요?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사무관 최만현 미납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배은희 위원 어느 정도로?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미납액은 552억에 는 미치지 못 할 거라고……

○지식경제부가스산업과사무관 최만현 담당 사무관 최만현입니다.

미납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미납할 경우에 3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공급 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미수금은 크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저희들이 이것 노력을 안 해 본 게 아니고 도시가스 업계에서 신용카드 업계하고 수수료 수준이라든가 한번 협의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양쪽 다 서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되고 해 가지고요 당분간은 그냥 전체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입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학재 위원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단일 품목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른 것보다 안정적이 잦아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한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부분하고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게 또 가스요금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요금으로 반영된다는 것은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인한 편익을 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과 그 편익에 대한 부담 그것이 요금의 인상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수수료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담 못 하도록 해 봤어요.

○이학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비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손범규 의원님께서 가스 사용자에게는 이것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짚어 넣으셨기 때문에 결국 도시가스사업자가 모든 추가되는 코스트(cost)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가스 사용자들이 주로 은행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를 통해서 대부분 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지 하는 그런 집단적인 문제 제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학재 위원 카드로 직접 내는 사람이 그만큼 적을 테니까 카드 수수료 자체도 그러면 얼마 안 발생 할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카드번호를 미리 가스회사에다 쥐 가지고 거기서부터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수수료 수준을 정확히 협상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다 정산해야 되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마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은행 계좌이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학재 위원 차후 논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허범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항 노영민 의원님의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 검토의견에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2항 이명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항과 24항은 보류하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데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자, 25항의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진실게임 하듯이 헛갈려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스공사의 입장이 지금 서면이나 어디에 구두로 진술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소위원회에 온 적 없지요?

○**지식경제부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 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입니다.

가스공사 노조의 입장이 사실상 어제 공청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어제 공청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경제부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 예.

○**김재균 위원** 정 반대의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류합시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보류하자고요?

○**김재균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정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실게임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의사일정 제19항 내지 제2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23항 내지 제2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다마는 순서를 좀 바꿔서 집단에너지사업법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

**3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 의원 대표발의)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의사일정 제33항 내지 제36항 최철국 의원, 김재균 의원, 홍장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정부 제출안은 지난 4월 16일 날 저희 법안소위에서 수정 의결을 한 바 있었으나 4월 20일 전체위원회에서 민영화 관련 우려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소위원회에 재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철국 의원 안과 김재균 의원님 안, 그다음에 홍장표 의원 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로 직접 회부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위에 재회부됐던 정부안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소유 제한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국외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부에게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채택한 후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비율을 법제화하는 최철국 의원 안은 정부 지분을 51% 이상 출자할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자 분포를 보면 정부가 46.1% 등인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정부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한 추가 출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저희 소위원회에서 정부에 촉구했던 정부의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는 사항과 조금 배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님 안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 및 민영화와 관련된 제44조의2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44조의2는 IMF 이후인 2002년 1월 공사의 상장 및 민영화를 대비하여 신설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상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네 번째, 홍장표 의원 안은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1안 저희 정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초과 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지 벌칙과 같은 제재조치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요, 다만 최철국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46.1%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부가 51% 이상 가져가게 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지분을 취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현재 공공지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부·한전·에관공·서울시 이것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균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정부안에서 주식 소유 상한이 제한이 돼 있고 또 제재조항이 신설됐고 해서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장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량행위 투명화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동 법안이 우리 지경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 상장 추진은 우리 법안이 소위원회나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사위·분회의를 통과하고 정상적인 법률 공포절차에 따라서 법률 시행이 된 이후에 추진돼야 할 사항인데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시기가 못 박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 개정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일정 한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법률 시행이 된 이후에 추진한다

그 말이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이 자리에 지역난방민영화반대비상대책위원장 허철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때까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사단법인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지역난방민영화반대비상대책위원장 허철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국가 권익과 또 국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명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식상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저희 주민들은 이것이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주식시장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다니면서 요구를 했고 탄원서도 냈고 또 각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요구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지역대표들이 다 모여 가지고 정부 측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또 의견 조율을 하고 했습니다.

해서,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주민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에 대한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고 선진화다, 일부 주식상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두 번째 보면 정부의 안 하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문서로 접수했습니다. 장관 명의로 해서 공공지분 51%를 유지한 상태로 일부 지분을 증시에 상장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문서로서 합의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 번째, 정부의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집사법이 개정되고 법이 발효된 후 상장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포가 된 다음에 주식상장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국회의 권고대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3%로 제한하는 것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서 공공성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 지역주민들은 끝까지 반대투쟁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주식상장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소유지분 한도를 3% 이내로 정관에다가 명시를 해 달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지금 하겠다는 문서로서, 거기 첨부된 문서에 보시면 장관 명의로 공문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으로서 일단락 짓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만 들어주시면 합의되는 걸로 지역대표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지분 51%는 지금이 문서로 확인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정이 안 되면 상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때요? 개정이 안 되면 상장이 안 되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집사법의 개정하고는 상관은 없는데요. 51%를 확실히 한다는 그것 하에 상장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인당 소유제한 그것도 된 뒤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명확히 한 뒤에 하겠습니다. 법이 발효된 후에 상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아마 주민들하고 대체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배은희 위원 홍장표 의원님 안은 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잠시 제가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관련된 조항 중에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 1항에 시행일에 관련된 단서를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분 제한하고 별칙, 그래서 이게 바로 시행이 돼야 저희들이 상장을……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아니, 말로 하면 어떻게 해? 종이를 주든지 해야 우리가 한번 읽어보든지 하지. 말로 그냥 수정안 낸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디 있나?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위원장님이 자구 정리 차원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게 더 좋은 거네. 지분 3% 제한하고 그걸 바로 한다는 거예요.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내는 부칙에 대한 수정안은 자구수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내지 3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353)

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619)

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 발의)

3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7분)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내지 제30항 김종률 의원, 주승용 의원, 이달곤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건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 제3조에서는 법정광물의 종류 및 분류를 정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안 제5조는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의 귀속 합리화를 위해서 분리된

광물은 토지소유자 등의 소유로 하되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정부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고 탐사 실적이 있는 광구에 대하여만 채굴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개발 광업권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행 규정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조광권 제도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라든가 법조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안에서는 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의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취득을 인정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인 외국인, 법인인 외국인에 대한 정의 및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및 절차규정이 마련이 돼 있고 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부담금을 이미 부과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안과 정부안에서는 광산 채굴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률 의원안은 채굴제한 범위를 지표 500m 지하 500m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정부안은 지표 50m 지하 150m까지 채굴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산보안 문제에 관해서는 광산보안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정부의 개정안이나 김종률 의원안은 광산 채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산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광산보안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는 김용구 위원님과 최연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주승용 의원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광권 수의 상한이라든가 조광권 설정방법 및 조광료 상한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모범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다만 이 중에서 석탄광에 대한 조광료 5% 상한규정은 행정적 탄력성을 위해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달곤 의원안과 정부안에서는 장기간 미시행되고 있는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95년 에너지 및 자원관련 5개 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면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하나로 부과금 규정을 신설한 조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용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시행령을 마련해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종률 의원안과 정부안에서는 양벌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 저희들이 대개 일치하고요.

2항은 수정의견에 따라서 제102조에 벌칙규정을 신설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권 이원화에 대한 법조문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4항에서 수정의견 주신 대로 안 제10조의2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김종률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광해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무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산 채굴제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에 지표 50m 지하 150m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김용구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현행대로, 현재의 정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표 50m 지하 50m라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부의 입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조광료 등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라

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특별히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5항에서요 이행보증금 예치규정을 신설하는 게 지금 광해방지부담금으로 부과중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유사한가요? 광해방지부담금하고 이행보증금 규모가?

○입법조사관 심정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이행보증금은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아직 규모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은 광해방지를 목적으로 따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지금 광해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대체를……

○배은희 위원 충분합니까?

○입법조사관 심정희 충분까지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그리고 내는 사람이 어차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그분들한테 계속 부담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요.

○배은희 위원 이중적으로?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광물의 수입부과금하고 판매부과금에 대한 근거규정이 그동안에 사실 집행이 안 된 규정입니다. 다마는 전체회의 때 김용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근거 자체를 삭제하는 이달곤 의원님 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마는 현재로서는 김용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규정을 삭제하는 걸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87조, 88조를 살린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삭제가 아니라

다시 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검토보고도 살리는 것으로 안 돼 있나?

○배은희 위원 검토보고도 바람직하다고……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삭제 안 하는 게?

○배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내지 제30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 의원 대표발의)

### 3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7분)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최연희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먼저 최연희 의원안에서는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주민과의 형평성 논란 최소화 등 또 탄광근로자와 탄광근로자가 아닌 자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마는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최연희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주민 복지를 위해 유족이나 지역주민 등에게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측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및 그 유족’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안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법령 정비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항에서 개정 법률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구 정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임대주택 우선 공급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최연희 의원님께서는 보다 더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그 유족에게까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 폐광지역에 임대주택 짓는 경우를 말하지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폐광지역에 지어진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임대 우선권이 관련된 조항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끝났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두 항밖에 없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및 유족인데 그 유족은…… 여기서 탄광근로자는 본인이잖아요? 그 유족은 한 사람인가요? 대표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민법상 유족의 범위가 들어가는데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통상적으로 유족의 범위가 법에 있지요.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전문위원의 새로운 수정안입니까?

○입법조사관 **심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 범위를 탄광근로자로 있을 때 사고로 사망한 그 유족으로서 지금 산재보험금을 받고 있는 그 유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규정할 수 없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택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는 보통 누구인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보통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사망한 분의 배우자 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이렇게 순서대로……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존비속으로서 지금 보험금을 받고 있는 사람.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유족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전체위원회에서 최연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제기를 하셔서 가지고요.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배은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근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만 되고 어떤 탄광근로자의 유족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그렇지요.

○**배은희** 위원 지금 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입법조사관 **심정희** 아……

○**배은희** 위원 그러면 이것 바뀌어야 되지요? ‘탄광근로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혹은 ‘탄광근로자였던’ 이렇게 바꾸면……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수정 조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 보시면……

○입법조사관 **심정희** 탄광근로자 이후에 지병으로 아니면 연로해서 돌아가신 유족은 해당이……

○**배은희** 위원 안 되잖아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탄광근로자’ ‘탄광근로자였던 자’ 이외에 유족의 범위를 정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법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서……

○**배은희** 위원 그래요.

(16시54분)

○**이학재 위원** 그러면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네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거주 요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김재균 위원** 떠나면 안 되는구먼.

○**이학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광근로자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이 1·2년 버티고 살다가 떠났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그렇지요.

○**김재균 위원** 상당히 까다롭구먼.

○**이학재 위원** 이것 좀 까다롭지 않나요? 여기서 지금 ‘3년 이상 거주한 자’는…… 맨 처음에 최연희 의원님 안은 그 폐광지역에 그냥 살기만 해도 혜택을 주자는 거였었는데……

○**입법조사관 심정희** 최연희 의원님은 처음에 ‘3년’으로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요 폐광지역에 이것이……

○**배은희 위원** 최연희 의원님도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폐광지역에 과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해당은 됩니다.

○**김재균 위원** 해당되지요? 탄광근로자로서……

○**입법조사관 심정희** 탄광근로자이면서 3년……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해당되지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예, 근로자이면서 3년 거주했다가 떠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전문위원님의 수정검토 의견까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소위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품안전기본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는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법안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해서 그동안 체계·자구 정리라든가 이런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협의된 수정안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목적·기본이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다양한 정책수단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의 일부 규정 등은 입법목적이 동일하므로 양자 간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기본법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협의 작업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정안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제정안은 기본법이므로 적용범위를 제품 중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없어 적용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품안전정책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품안전은 범부처적인 업무인바,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중복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네 번째, 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부터

## 5. 제품안전기본법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16조까지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 기준 준수조사 및 안전성조사,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사업자의 제품 자진수거 등의 조치 의무, 고용인의 내부자신고, 사업자에 대한 제품 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제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의 소비자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식경제부 소관 제품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주체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조사와 안전성조사 모두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 여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으므로 하나의 제도로 통합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권고와 명령의 발동 요건을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섯 번째, 제품안전정책수단을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안전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제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품안전에 관한 지원, 제품안전의 날 제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은 소비자기본법상의 제도와 중복이 되고 제품안전특성화대학원은 대학 자체 역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제품안전정보망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차별성이 인정되므로 이 제품안전정보망에 대해서는 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품안전에 관한 출연 근거 신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에 대한 출연 근거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나, 다만 이 출연규정을 삭제할 경우에는 제품안전 관련 기술개발 출연이라든가 국제협력 사업 수행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벌칙·과태료 등 기타 규

정에 관해서는 공무원도 조사, 보고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직무 관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또 위반의 정도가 낮은 권고 위반에 벌칙을 부과하고 명령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내부자신고를 한 종업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타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배은희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입법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심의·제정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수석전문위원실과 법안을 법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관계 부처하고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과 저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기본법 문제에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협의가 이루어져서 됐고요. 그다음에 그 주체를 ‘지식경제부’에서 ‘정부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또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정부’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해서 범부처적인 제품안전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이 법체계나 자구 수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배은희 위원 질의 전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동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요. 저희가 발의해 놓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정부 부처 간에 저희 의원실하고 충분히 논

의를 거쳤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균 위원 기재부가 제품안전에 대한 출연 근거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1조를 삭제할 때는 ‘제품안전 관련 기술개발 출연 및 국제협력 사업 수행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당초에 21조에 배은희 의원님께서 주셨던 법안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용도에 대해서 정부가 출연을 해야 되는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제품안전에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금 R&D 사업의 일부로 이미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제품안전 연구 등에 대한 출연’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 근거를 좀 만들었고요.

그 외에 국제협력에 관한 것도 별도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 교류라든가 전문가 교류, 국제회의 참가 이런 활동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원안의 21조를 줄이는 대신에 제품안전 연구에 대한 출연, 국제협력의 근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제품의 수거와 관련해서 수거를 권고하고 그다음에 따르지 않으면 공표하고 수거를 명령하고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수거를 대신하고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이학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강하게 ‘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학재 위원 예,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그게 아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법에서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의무……

○이학재 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이것 때문에 저

도 좀 살펴봤는데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디는 수거가 되고 어디는 수거가 안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을 만든 사람 또 유통시킨 사람이 그것을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위원님, 제품을 누가 수입해서 누가 유통시켰는지 하는 게 분명히 딱 밝혀지고 그 사업자를 우리가 쉽게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면 지금 의무화를 다 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 대부분의 불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이 수입경로 같은 게 추적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없어서 버리거나, 그런데 제품 수거는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부담으로 일부 수거를 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 줘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에게 내라 하게 되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상당히 더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학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저희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에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행정적인 의무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학재 위원 아, 고민하셨나요, 그 부분을?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3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4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4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4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4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5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3.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54.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5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5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57.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09분)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52항 이시중 의원, 강창일 의원, 김희철 의원, 최구식 의원, 이정희 의원, 주성영 의원, 이용섭 의원, 노영민 의원, 안상수 의원, 이종걸 의원, 주승용 의원, 김재균 의원, 조승수 의원, 배은희 의원

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4항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김희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심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이번엔 새로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개정안 및 청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유통산업발전법 대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병합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개정안과 청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500㎡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심의를 받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 상권과 교통환경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으며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허가제를 도입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허가를 하기 위해서 개설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시키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문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하자,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개설 허가 전에 개설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입지나 매장 면적, 영업시간, 영업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우리 법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이 제시가 되었고 이 대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다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정부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난 10월 19일 날 전문가들의 대토론회가 있었고 11월 3일 날 정부에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이라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대안) 정부 검토의견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그 직영점 등록제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를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져왔고, 두 번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는 부분수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래시장이나 시장활성화구역을 그 인접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지만 상점가는 수용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 왔습니다.

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 해 가지고 조건부 수용을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500m 이상을 500m 이하로 수정하여 수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개진을 했고……

네 번째, 등록요건 추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수용이 곤란하다, 불가하다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도 수용이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보시면 항목별 보고를 드리기에 지난 10월 19일 날 전문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했던 녹취록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통상법 관련 전문가들이 여섯 분, 국내 규범 합치성 문제를 진술할 전문가 여섯 분, 열두 분이 우리 대안을 놓고 진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대안이 국제통상법 합치성 문제와 관련하여 통상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위원회 대안이 WTO GATS 서비스무역 규범에 합치된다는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및 운영 과정에서 GATS 제 6조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나 객관성, 공평성 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도 우리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외교통상부는 위원회 대안이 대체적으로 WTO GATS 규범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와 향후 체결될 FTA와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런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국내 규범 합치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등권 문제나 조례 위임의 포괄성,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찬반 입장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그 직영점 등록제 확대는 정부 입장이 등록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지경위원회 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 의견은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 그 인근 지역까지는 수용을 하겠는데 상점가는 유통산업의 전통적 역사를 지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하다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점가 현황을 보면 상점가는 현재 전국적으로 4300개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조식을 갖춘 상점가는 한 338개 정도이고 실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는 한 188개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1550개 정도 있

습니다.

과연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의 대안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 중인 SSM 76개의 출점 지역을 500m나 700m 이런 우리의 대안하고 같이 접목을 해 보았을 때 500m 안에는 전통시장은 26개가 들어가고 상점가는 1개, 이 범위를 1000m 정도 했을 때도 상점가는 4개 정도, 총괄적으로 한 5개 정도, 사실은 상점가는 이 대안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항목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에 보면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입법정책적으로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은 WTO 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닝(zoning) 개념을,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조닝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상점가가 특별히 WTO 위반이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상점가를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는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 허가제에 해당하는 등록조건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대안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500m 이상으로 정할 경우 전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당 규제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한 시장 접근 제한으로 WTO 서비스 협정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500m 이내로 수정을 하여 수용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현재 1차 상권이나 2차 상권, 그 상권별 분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상권을 1차나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상권은 상점 고객의 60~70% 정도가 거주하는 상점 범위 내에 있는 상권을 말하며 슈퍼마켓이나 SSM과 같은 근린형 점포로서 근린은 500m 반경 이내로 보는 것을 1차 상권이라고 하고 2차 상권은 상품판매액의 15~25%가 거주하면서 반경 1km 이내의 상권을 2차상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조정 중인 76개의 출점 지역을 거리별로 분석을 했을 때 500m 이내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26개, 상점가는 1개, 함께 비율 상으로

는 35.5%가 500m 반경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1000m 정도까지 확대를 하면 전통시장은 한 50개, 상점은 한 5개 정도 해 가지고 72.4%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 거리와 관련하여 명확히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임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대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어떤 최소한의 수준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점포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하고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대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5000m 이상 1000m 이내의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등록요건의 추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정위원회 대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시설, 소음, 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의 등록요건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WTO 서비스 협정 위배,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럼으로써 1000m<sup>2</sup> 이상의 모든 종합소매점에 대해서 본래 정책목적에 적합하게 관련 관계법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은 기본적으로 허가과 달리 등록요건을 구비하면 행정청은 거부할 수 없지만 등록자격이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등록제라는 성격상 우리 대안 자체가 등록제입니다. 등록제라는 성격상 WTO GATS와 관련하여 등록요건의 추가 사항이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한 GATS 제16조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WTO GATS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중소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비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수준에서는 합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합리적인 차별 여부는 법률 제정 당시의 입법적 요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우리 위원회 대안의 요건의 추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 내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므로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차후에는 동 조항에 대한 해당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영업시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대안에서는 소비자나 대규모 점포의 근로자의 건강,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 및 인근 지역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수의 지정 등을 조례로 정하자 이런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의 제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WTO GATS 규범 내에서 허용된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를 영업 서비스 총량 제한으로 보아 가지고 GATS 제16조 위반으로는 보지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규범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 문제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행 다른 법률이나 청소년 게임 영업법이나 공중위생법 등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항상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에 13페이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서비스무역협정은 그 조문에서도 천명하고 있듯이 GATS 제6조(국내규제) 및 제16조(시장접근) 그리고 제17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국이 자국 내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위원회 대안은 WTO GATS의 규범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입안되었고,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통상전문가들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WTO 규범에 합치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위원회 대안의 어떤 항목을 수용하고 못 하기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WTO GATS 규범에의 비합치성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에 따른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임채민** 예, 저희 의견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아마 말씀을 줄여서 하시다 보니까 혹시 듣기에 따라서는 결론이 나 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는 WTO 규범에 합치된다는 입장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뒤에 문서 온 것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는 확대하는 것 자체가, WTO 지금 현재 규범의 등록제 확대라는 정부가 택한 방법론, 그 기본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방법의 문제는 남아 있지요. 등록제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서는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하는 점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적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까지 포함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는, 정부가 이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이런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제 규범에서 허용한 문화유산 보호, 저희들이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보호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측면,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위원회 대안을 함께 논의해 왔던 것인데 상점가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이게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통상업 보존을 통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이 상점가의 모양을 보시면 요즘에 새로 형성된 상점가들의 경우에 거기를 저희가 전통상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00m에서 1000m까지 확대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통계를 내주셨는데 '현재 사업 조정 중인 76개를 대상으로 한 75% 정도가 1000m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문 전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논리를 폈을 경우에 이게 양적 규제라는 점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m를 넘어서 1km까지, 어떤 일정 구역에서 1km가 떨어진 지역까지, 거의 뭐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까지를 다 묶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를 다시 우리가 어떻게 문화유산 보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누가 와서 보든지 간에. 또 그 안에 굉장히 현대화된 상점가들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도 낮이 좀 붉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1km 범위 내까지를 다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서 특정 업체가 입주 못 하게 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점도……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지 않는 다른 많은 선량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요건의 추가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실효성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는 단서는 다셨습니다만 이런 규제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중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환경, 입지, 시설, 소음, 교통영향이나 주민 안전에 대해서 SSM, 기업형 슈퍼는 이것을 꼭 신경을 써야 되고 비슷한 규모의 중소형 슈퍼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형 슈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는 식의 규제는 아마 국민들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슈퍼는 소음을

막 내도 되고 중소형 슈퍼는 소음을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 정부 때에도 한번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가 아마 철회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소 유통업계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이 특별한 의미가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걸로 압니다.

이것은 영업서비스의 총량을 저희들이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많은 편의점들이나 이런 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중에 일부 기업화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밤에 오히려 더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정한 기업이 소유한 가계에 대해서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업계에 대해서는 업계가 현재 좀 자발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SSM 중 상당수가 한 9시부터 11시 사이에 대개 문을 닫습니다. 그 이유는 SSM이 입주해 있는 상가가 문을 닫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역세권 같은 데는 조금 영업시간을 길게 한다고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일반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SSM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9시부터 11시 사이에 대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청소년 안전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자율결의 식으로 영업시간을 지역별로 좀 조정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업계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회에서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정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다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재균 위원 정부 검토안을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경위 대안에 대해서 명백하고 실질적인 거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경위 대안으로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안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내놓았는데 '500m 이상'을 '500m 이내'로 수정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의무 휴일일수 등 영업행위 조정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상 조정기능, 상점가 제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낱말이 이야기는 않겠습니까마는 정부가 지경위에서 낸 대안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미로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경위 대안을 거부함으로써 지경위 대안의 상임위 상정이 지금 불가능한 관계로 허가제 도입을 근거로 하는 민주당 대안을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제만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형마트와 SSM 출점으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현실이고요.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언제든지 출점이 가능한 등록제로는 참 허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허가 주체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출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허가제만이 적절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안도 여기서 들어가시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학재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이학재 위원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오늘 결론을 내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하고 또 위원회 대안하고의 간격도 굉장히 크고 또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저번에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허가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배은희 위원 민주당에서 허가제로 대안을 다시 제시하신 거지요?

○이학재 위원 안은……

○배은희 위원 안을 아직……

○이학재 위원 안이 됐나요, 지금?

○배은희 위원 이것은 안 주셨는데 이제 제안을 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나왔던 거로는 지금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배은희 위원 그래서 민주당 대안은 허가제 구간다. 그러면 그 대상이, 저희가 이 논의하면서 또 토론 대상이 됐던 게 농협이거든요, 농협. 농협도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농협은 사실 공급자들이 우리 농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협에…… 농협도 이제 SSM처럼 소규모 점포가 들어가거든요. 민주당 허가제 대안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농협까지 가는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아직 안 했는데요, 개인적인……

○배은희 위원 그런데 그게 면적으로 하다 보면 그 면적만 피해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 한나라당에서 논의했을 때, 그래서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직영하는 점포 쪽으로 허가제로 가도 대상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을 저희가 냈고, 그 와중에 거기에 농협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토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논의는 여기서 더 안 될 것 같고 민주당 대안을 또 정부가 한번 검토를 하시

고 나서 저희가 더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대안도 의원님들이 낸 16개 법안을 가지고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법안소위하고 오늘 하는 그 사이에, 전번에 법안소위하고 오늘 하는 그 사이에 또 4건이 제출됐습니다. 앞으로 몇 건이 제출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김재균 위원님이 허가제를 근거로 하는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현재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정부 간 간격이 많이 큰데, 또 앞으로 법안이 계속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서 허가제도 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가제를 대비해서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실에서 허가제에 대비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법안이 계속 제출 중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오늘 논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내지 제57항은……

○전문위원 문병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예.

○전문위원 문병철 저희 검토의견서에 보면 외무부 의견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외통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개진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 대안을 만들 당시에 정부에서 하도 WTO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WTO 규범 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적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안이 지금 현재 우리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아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문병철 예.

○배은희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회 대안 또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법안이 4개 더 나왔는데……

○전문위원 문병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이명규 위원회 대안 또 만들어

야 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자, 의사일정 제37항 내지 제5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재균	노영민	배은희	이명규
이영애	이종혁	이학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전문위원	문병철

○정부측 참석자

지식경제부			
제1차관	임채민		
산업경제정책관	이관섭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서홍석		
에너지자원실장	김정관		
에너지산업정책관	한진현		
중소기업청			
청장	홍석우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		
특허청장	고정식		